

사적 소득이전과 노인소득보장

김 희 삼*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정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 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 소득이전은 사적 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서 론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OECD 평균(2001년 기준)을 보더라도 GDP의 22.5%에 달하는 사회 복지지출 가운데 무려 35.8%가 고령인구 부양을 위해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같은 해 기준 GDP의 8.7%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지출 가운데 14.0%가 고령인구 부양에 쓰이고 있다. 이러한 갭은 다음의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과 같이 고령 인구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이 상대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다. 둘째, 생계형 근로에 종사하는 고령인구가 많다(박창균, 2005). 셋째, 자식의 노부모 부양관습이 남아있다(석재은·김태완, 2000). 이 중 두번째와 세 번째 요인은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미비했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식의 노부모 부양은 동거를 통한 부양 이외에

* KDI 연구위원. 필자는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구축해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에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며, 데이터 정리 및 분석을 성심껏 도와준 KDI의 강은정 연구원에게 감사드린다.

도 노부모 가구에 대한 사적 소득이전(private income transfer), 예컨대, 생활비 제공이나 용돈 지급 등의 형태로 노인빈곤에 대한 일종의 사적 안전망(private safety net)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핵가족화·개인주의화·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 추세는 고령인구를 각자의 자식에게만 맡겨놓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국가에 대한 노인복지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남은 21세기에 노부모는 우리나라 부모의 노후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고령인구의 소득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적·공적 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수행한다. 우선 정책변수인 공적이전에 비해 이전 동기나 이전액의 크기 및 패턴의 변화를 쉽게 파악하기 힘든 사적이전에 대해 미시 데이터를 사용한 다각도의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한 공적이전의 빈곤완화효과를 사적이전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실증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의 빈도와 액수는 어떤 수준인가? 어떤 자식이 어떤 특성을 가진 부모에게 어떤 동기로 경제적 도움을 주는가? 공공부조를 비롯한 공적이전은 자식의 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행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와 누수구, 그리고 노부모 부양패턴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노인소득보장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연구는 근간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세대간 소득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 문제에 대한 학문적 기여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정책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학문적으로 세대간 소득이전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는 특히 부모의 자식에 대한 투자모형(예: Becker, 1974, 1991; Becker and Tomes, 1986; Behrman et al., 1982; Cox, 1987 등)을 분석틀로 하여 지난 20여 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진척되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논의의 종결을 보지 못해 여전히 다음과 같은 미결과제를 남기고 있다. 첫째, 사적이전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의점을 찾았다고 보기 어렵다.¹⁾ 둘째, 사적이전이 공적이전을 구축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적인 결론에 이를만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양질의 새로운 데이터를 잘 정의된 모형에 사용한 실증연구결과와의 소개는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기여가 될 것이다. 또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소득이전이 드물게 이루어지는 미국과 달리, 부모가 노후 생계를 자식의 소득이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이전의 동기나 정책적 시사점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세대간 소득이전 문제를 자식의 노부모 부양이라는 각도에서 조명한 새로운 실증연구로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질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방안과 관련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질 것이다. 우선 자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많지 않은 한국의 노인가구는 자식 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에

1) 예컨대 McGarry and Schoeni(1995, 1997), Dunn and Phillips(1997), McGarry(1999, 2000) 및 Hochguertel and Ohlsson(2000) 등의 연구는 이타적 보상동기를 뒷받침하는 반면, Cox(1987), Cox and Rank(1992), Cox, Eser, and Jimenez(1998), 그리고 Laferrère and Wolff(2004)에 수록된 프랑스 논문들은 이기적 교환동기를 지지하며, Kim(2005)은 이타적 동기와 편애를 동시에 포함한 복합적인 동기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소득이전을 설명하고 있다.

상당부분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에 관한 연구는 고령인구 부양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조의 빈곤완화효과와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공공부조가 사적이전을 비롯한 민간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dead zone) 및 누수구(loop-hole)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먼저 II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대략적으로 검토하고 본 연구의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III장에서는 노부모와 자식 상호간의 소득이전의 실태를 살펴보고 미국의 경우와도 비교해본다. IV장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 모형을 다각도로 추정하여 소득이전에 영향을 주는 노부모와 자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관계를 분석한다. V장에서는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측정하고,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와 누수구를 점검하며, 노부모 부양 패턴의 변화 추세를 조망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선행연구와의 관계

한국에서 사적 소득이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적이전의 빈곤완화 효과에 초점을 맞춰, 손병돈(1999), 석재은·김태완(2000), 김교성(2002), 홍경준(2002), 김진욱(2004), 박찬임(2005)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저소득층이 공적이전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주로 부유층을 중심으로 사적이전이 이루어지는 선진복지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사적이전이 빈곤층의 생계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오히려 소득분배를 개선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사적이전의 동기 및 공적이전에 의한 사적이전 구축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사적이전 관련 데이터의 축적과 함께 활기를 띠고 진행되어왔지만, 아직 확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미국 대통령 산하 연금정책위원회 조사 자료를 사용한 일련의 연구에서, Cox(1987)는 사적이전의 행태가 이타적 동기보다는 이기적 교환동기(예컨대 사적이전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와 더 잘 부합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Cox and Jakubson(1995)의 연구는 이타적 동기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은 공적이전의 사적이전 구축 증거를 찾지 못했다. 진재문(1999) 역시 만 55세 이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중 사학연금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일반인으로 구성된 약 500명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공적이전액이 사적이전액을 줄인다는 일관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강성진·전형준(2005)은 한국가구경제패널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제2~7차) 데이터를 사용해, 사적이전이 이타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며 공적이전은 사적이전을 상당부분 구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한국노동패널의 제6~7차 연결 데이터를 사용한 성재민(2006)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런데 공적이전은 공적연금,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된 공적이전의 범위를 우선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1차안전망으로 깔려있고, 여기서 제외된 저소득층에게는 경로연금을, 그리고 빈곤선 이하의 계층에게는 최종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는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체계의 다층적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세부적인 소득원과 공적이전의 구성요소들이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인 설명변수들로 분리하여 각각의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 중 자식으로부터의 이전을 여타의 사적 소득이전과 구분하고, 자식(제공자)의 입장에서 보고한 소득이전과 부모(수급자)의 입장에서 보고한 소득이전을 비교하여 이전소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흔히 등장하는 측정오차(특히 수급자의 축소 보고) 문제를 점검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다양한 변수들, 예를 들면 노부모의 결혼상태, 주관적 최소생활비 수준과 실제 소득과의 갭, 생활비 지출패턴, 부동산·금융자산 등의 부와 부채, 그리고 거주지역 등을 분석에 도입해 이들이 사적 소득이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나아가 원자료에서 관찰되지 않은 변수들의 영향은 한 가구의 정보가 다년간에 걸쳐 보고된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한 계량경제모형으로 통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 제안과 관련해서는 문형표 편(2005)과 정경희 외(2005a, 2005b)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특히 문형표 편(2005)에 수록된 일련의 연구들은 인구고령화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윤진호 외(2004)와 이태수 외(2004)의 연구는 빈곤해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공부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노인소득보장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노인소득원의 역할을 해온 사적 소득이전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가구패널 데이터를 사용해 사적 소득이전에 관한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고 실증결과와 향후 전망을 토대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연구가 갖고 있던 분석상의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적 소득이전의 실태와 그 결정변수에 대한 미시적 분석, 사적·공적 이전의 빈곤완화효과 추정,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와 누수구에 대한 검토, 그리고 노부모 부양규범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향후 사적 소득이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바탕에서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먼저 이 논문은 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포함하지 않고, 미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실태 파악과 실증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론적 모형의 도입을 통해 추가로 얻을 것이 특별히 없다는 판단과 지면의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다.²⁾

2) 부모에 대한 자식의 소득이전이 드문 미국적 환경에서 세대간 소득이전의 분석들은 주로 자식에 대한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특히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에 대한 문항이 도입된 제4차 조사 이후의 데이터와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부가조사가 포함된 제6차 조사 데이터를 이용한다. KLIPS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에 해당하는 표본 조사구 중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를 표본으로 1998년에 1차 조사를 시작한 장기추적 생애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표본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해마다 조사하고 있다. 8차 조사가 완료된 2005년까지도 원표본가구 유지율이 78%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어 향후에도 패널자료로서의 장점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³⁾ 본 연구와 관련해 KLIPS는 사적 소득이전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인 동시에, 각종 공적이전의 수급상황 또한 상세히 보고하고 있어, 공적이전의 사적이전 구축(crowding-out) 여부를 미시적으로 조사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세대간 소득이전행태에 대한 국제비교를 위해 본 연구는 유용한 관련정보가 있는 미국의 패널 데이터, 특히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와 WLS(Wisconsin Longitudinal Study)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분석해나가고자 한다. 첫째, KLIPS 데이터에 나타난 부모와 자식 간의 경제적 교류의 빈도와 액수를 살펴보고, 이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한다. 모든 원자료 통계에 가구별 가중치를 적용해 한국의 평균적인 노부모 부양 실태를 대략적으로 스케치한다.

둘째, 제6차 조사에 포함된 중고령자 부가조사자료를 이용해, 자식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이 부모의 각종 소득원천(근로, 금융자산, 부동산, 공적연금,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에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한다. 종속변수로 자식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의 존재 여부를 사용하는 프로빗(Probit) 모형에서는 가족 내의 상관성을 통제한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를 계산하고, 소득이전액수를 종속변수로 분석함에 있어서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를 고려한 일반화된 토빗(Generalized Tobit) 모형을 도입한다. 부가적으로 부모의 결혼상태, 건강상태 등이 소득 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소득이전행태의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부모의 소득이전 또는 투자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개발되어왔다. 특히 부모의 이타적 선호(altruistic preference) 가정에 바탕을 둔 Becker and Tomes(1986)류의 모형과 Berhman et al.(1982)류의 모형이 널리 활용되어왔다. 또한 Cox(1987)류의 모형은 소득이전의 동기(이타적 동기 對 이기적 교환동기)를 테스트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Laferrère and Wolff(2004)는 사적 소득이전 관련문헌에 등장한 다양한 미시모형들을 핵심 가정에 따라 단순화하여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론적 모형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참고할 만하다.

- 3) 다른 나라의 대표적인 연례조사방식의 가구 패널 데이터와 비교해서도 KLIPS 데이터는 현재까지 대등한 수준으로 높은 원표본가구 유지율, 즉 낮은 표본탈락률(attrition rate)을 보이고 있다. 8차 조사 시점에서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보면 1968년에 시작한 미국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는 74%, 1984년에 시작한 독일의 GSOEP(German Socio-Economic Panel)는 79%, 1990년에 시작한 영국의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는 69%였다. 한편 1993년에 시작한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 가구경제활동조사(KHPS: Korean Household Panel Study)는 1998년 6차 조사에서 원표본가구 유지율 44%를 기록하고 종료되었다.

주는 데 있어서 아들과 딸의 차이가 있는지도 탐구한다.

셋째,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에 대한 설문이 담긴 제4차부터 제8차에 이르는 조사 자료를 가구별로 매치시켜 5개년에 걸친 소득이전의 동학을 파악하고, 각 가구당 다시점(multi-period) 관측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용해 개별 가구의 관찰되지 않은 시간불변적인 특성(time-invariant heterogeneity)이나 가족특수적인 특성(family-specific heterogeneity)을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으로 통제된 추정치를 얻어낸다. 특히 자식가구의 소득 및 인구학적 변동이 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미국의 주요 가구패널조사 중 하나인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추적 조사한 한국노동패널의 분가자식가구(split-off families)를 원가구(original families)와 매치시켜 부모가구와 자식가구의 대등하고 병렬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어떤 특성을 가진 자식이 어떤 특성을 가진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가구주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과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6차 기본조사와 중고령자 부가조사에서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 세대 표본을 추출하고, 각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추정된 후, 자립적인 가구소득에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이 추가될 때의 빈곤완화효과를 살펴보고 소득이전 후에도 남아있는 빈곤갭의 규모를 가구별 가중치를 이용해 추정한다. 아울러 노인가구주 세대에 대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와 누수구를 점검하고 그 규모를 추정한다. 끝으로 설문조사에 나타난 노부모 부양패턴의 변화를 살펴본 후에 향후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III. 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의 실태

부모가구와 성인자녀가구 사이의 경제적 교류관계에 대해서는 2001년의 KLIPS 4차 조사부터 가구별 조사항목에 관련설문이 포함되었다. 질문 내용은 동거하지 않는 부모와 작년 한 해 동안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았는지의 여부와 주고받은 액수에 관한 것인데, 경제적 교류에 법적인 증여나 상속은 제외할 것과 현물 공여(예를 들어 쌀, 부식, 가전제품 등을 보내거나 사주는 경우)는 당시 가격으로 환산해 포함시키라는 지시문이 부가되었다. 실제 조사에서는 가구주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각각 질문이 제시되었지만, <표 1>에 제시한 소득이전은 가구주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를 구분하지 않고 양가 부모와 주고받은 경제적 도움을 합산한 것이다.⁴⁾

<표 1>을 보면 대략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1년 동안 부모로부터의 소득이전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소득이전을 받은 성인자녀가구의 평균 이전액은 한 가구에서 예외적으로 큰 금액(5억원)이

4) 양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합한 이유는 <표 2>에서 비교대상이 될 미국 데이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묻기 때문이다. <표 3>에서는 양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내용을 따로따로 제시하고 차이점을 보고한다.

포함된 6차 조사를 제외할 경우 대체로 200만원대 중반, 중위 이전액은 1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적어도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이 있으며, 소득이전을 실행한 경우 평균 이전액은 100만원대 후반에서 200만원대 초반, 중위 이전액은 100만원대 초반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간 소득이전은 성인자녀가구에서 노부모가구 쪽으로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즉 노부모가구의 소득이 성인자녀가구의 일상적인 소득이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한국의 세대간 소득이전 실태

조사차수 (연도)	측정시기	부모로부터의 소득이전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	
		이전가구 비율	평균 [중위] 이전액	이전가구 비율	평균 [중위] 이전액
4차 (2001년)	작년 한 해 (2000년)	18.1% (N=2,771)	232.2 [70] (n=338)	50.7% (N=2,771)	145.4 [80] (n=1,062)
5차 (2002년)	작년 한 해 (2001년)	18.8% (N=2,723)	251.4 [80] (n=338)	56.1% (N=2,723)	173.1 [100] (n=1,164)
6차 (2003년)	작년 한 해 (2002년)	20.4% (N=2,979)	532.0 [100] (n=428)	58.5% (N=2,979)	182.7 [120] (n=1,336)
7차 (2004년)	작년 한 해 (2003년)	23.7% (N=3,056)	231.5 [80] (n=503)	65.5% (N=3,056)	214.7 [120] (n=1,537)
8차 (2005년)	작년 한 해 (2004년)	22.6% (N=3,112)	259.3 [100] (n=516)	62.4% (N=3,112)	196.4 [120] (n=1,527)

주: 비율과 액수는 각 조사년도의 가구별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연간 소득이전액(이전을 한 경우의 평균값 [중위값])은 만원 단위임.

자료: 제4차~8차 KLIPS 데이터에서 필자가 계산.

우리나라의 세대간 소득이전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표 2>는 사적이전에 관한 설문이 포함된 두 종류의 미국 패널 데이터,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와 WLS (Wisconsin Longitudinal Study)에 보고된 사적이전의 현황을 제공대상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과 비교할 때 주의할 점은, 첫째, 설문의 측정기간과 보고하한액(censoring amount) 설정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 둘째, 부모로부터 자식으로의 소득이전이 KLIPS에서는 수급자인 자식에 의해 보고됐지만, HRS나 WLS에서는 제공자인 부모에 의해 보고됐으며 다자녀부모의 경우 다수의 자식을 상대로 한 소득이전에 대한 보고라는 것, 셋째,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은 세 데이터의 설문응답자가 모두 자식이지만, 이 경우에도 자식의 평균연령이 다르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주의사항을 감안하더라도, <표 2>에 나타난 미국의 노부모에 대한 성인자식의 소득이전은 자기 자식들

5) 예컨대 1992년 WLS 데이터의 경우 설문응답자의 연령이 50대 초반이며, 1992년 HRS 데이터의 경우에는 50대 초에서 60대 초에 이르는 연령분포를 갖고 있어서, 2005년까지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40대 초 중반인 KLIPS 데이터에 비해 평균연령이 높다.

(노부모의 손자녀들)에 대한 소득이전에 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부모에 대한 성인자식의 소득이전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부모에게 소득이전을 실행한 미국의 성인자식가구는 어느 데이터의 어느 조사년도를 보더라도 열 가구 중 한두 가구에 불과하며, 액수도 한국과 미국 간의 1인당 GDP 차이(2004년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미국의 52% 수준)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한국과 달리 ‘부양가족’ 개념에 노부모가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미국의 문화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노부모가 은퇴 후에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전이 없더라도 자산소득이나 사회보장급여, 취약계층의 경우 보충적 사회보장소득(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같은 공적이전을 바탕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차이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⁶⁾

<표 2> 미국의 세대간 소득이전 실태

데이터 (조사년도)	측정시기 및 보고하한액	자식에 대한 소득이전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		그 외 사람에 대한 소득이전	
		이전가구 비율	평균[중위] 이전액(\$)	이전가구 비율	평균[중위] 이전액(\$)	이전가구 비율	평균[중위] 이전액(\$)
WLS (1992)	1975년 이후 \$1,000 이상	64.9% (N=7,740)	29,852 [14,000]	5.4% (N=8,248)	12,561 [5,000]	6.8% (N=8,254)	9,602 [4,000]
HRS (1992)	지난 1년간 \$500 이상	34.8% (N=3,920)	4,609 [2,000]	10.8% (N=2,180)	1,929 [1,000]	N/A	N/A
HRS (1994)	지난 1년간 \$100 이상	47.6% (N=5,821)	4,416 [1,500]	8.7% (N=6,228)	1,191 [500]	10.7% (N=6,688)	1,407 [500]
HRS (1996)	지난 2년간 \$500 이상	41.2% (N=5,993)	6,729 [3,000]	16.8% (N=3,752)	2,959 [1,200]	7.0% (N=6,406)	3,316 [1,200]
HRS (1998)	지난 2년간 \$500 이상	38.4% (N=5,946)	14,529 [7,000]	14.9% (N=3,442)	3,259 [1,500]	6.5% (N=6,387)	3,988 [1,500]
HRS (2000)	지난 2년간 \$500 이상	37.4% (N=5,639)	15,657 [6,000]	17.3% (N=2,853)	1,948 [700]	6.9% (N=6,066)	3,670 [1,500]

자료: 제1차~5차 HRS 및 1992년 WLS 데이터에서 필자가 계산.

한편 KLIPS 데이터에서는 양가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행태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 내지는 가부장적 요소로 의심될 수 있는 차이가 발견된다. <표 3>은 <표 1>에서 보인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내용을 남편의 부모와 아내의 부모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⁷⁾

6) 1984년에(1982년 달러 기준, 가구원수 조정) 미국 노인가구 중 최상위 20% 소득가구(평균 가구소득 \$34,061)의 소득구성은 근로소득 \$9,450 (27.7%), 자산소득 \$13,289 (39.0%), 사회보장급여 \$5,901 (17.3%), 기타소득 \$5,421 (15.9%)로 조사되었고, 최하위 20% 소득가구(평균 가구소득 \$3,986)의 소득구성은 근로소득 \$73 (1.8%), 자산소득 \$168 (4.2%), 사회보장급여 \$3,102 (77.8%), 기타소득 \$643 (16.1%)로 조사되었다(Hurd, 1990, p. 580). 이처럼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급여가 노인소득보장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의 필요성을 줄이고 있다.

양가 부모로부터의 소득이전에 있어서는 그 빈도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남편 부모로부터의 평균 이전액이 다소 크게 나타났지만 중위 이전액은 거의 동일했다. 그러나 남편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은 아내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보다 약 10% 포인트 정도 빈번하게 관찰되었으며, 아내 부모에 대한 평균 이전액은 남편 부모에 대한 평균 이전액에 비해 40~60% 가까이 적었고 중위 이전액도 40~50%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데이터가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노부모 부양에서 처가부모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이전을 하는 가부장적 의사결정이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⁸⁾

<표 3> 한국의 세대간 소득이전에서 부부간 차이

조사 차수 (연도)	남편 부모로부터		아내 부모로부터		남편 부모에게		아내 부모에게	
	이전 가구 비율	평균[중위] 이전액	이전 가구 비율	평균[중위] 이전액	이전 가구 비율	평균[중위] 이전액	이전 가구 비율	평균[중위] 이전액
4차 (2001년)	16.6% (N=1,924)	161.5 [50] (n=326)	13.5% (N=2,273)	103.5 [40] (n=313)	53.1% (N=1,924)	115.0 [50] (n=1,000)	40.0% (N=2,273)	72.2 [30] (n=894)
5차 (2002년)	15.9% (N=1,898)	178.1 [50] (n=309)	14.5% (N=2,224)	150.2 [50] (n=319)	57.5% (N=1,898)	137.1 [70] (n=1,084)	47.1% (n=2,224)	69.0 [40] (n=1,038)
6차 (2003년)	18.3% (N=2,089)	513.0 [50] (n=400)	15.5% (N=2,398)	93.2 [50] (n=378)	59.8% (N=2,089)	139.5 [100] (n=1,244)	49.8% (N=2,398)	86.6 [50] (n=1,200)
7차 (2004년)	21.3% (N=2,168)	222.2 [50] (n=482)	19.8% (N=2,439)	139.7 [50] (n=479)	65.8% (N=2,168)	178.2 [100] (n=1,439)	57.4% (N=2,439)	77.3 [50] (n=1,401)
8차 (2005년)	19.5% (N=2,181)	208.3 [50] (n=466)	18.3% (N=2,437)	144.2 [50] (n=471)	64.4% (N=2,181)	149.7 [100] (n=1,412)	55.9% (N=2,437)	84.5 [50] (n=1,381)

주: 비율과 액수는 각 조사년도의 가구별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연간 소득이전액(이전을 한 경우의 평균값 [중위값])은 만원 단위임.

자료: 제4차~8차 KLIPS 데이터에서 필자가 계산.

7) 원자료에는 가구주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와 배우자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가 각각 보고되어 있는데, 조사대상가구 중에서 가구주(설문지에서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여성으로 보고한 경우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여성 가구주 비율은 4차 조사 15.3%, 5차 조사 16.0%, 6차 조사 18.0%, 7차 조사 18.3%, 8차 조사 19.6%로 점진적인 증가추세였다. 그런데 성별에 의해 규정되어 온 전통적인 가부장적 요소를 살펴보면, 가구주 여부보다는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내용이 달랐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표 3>에서는 원자료의 통계를 성별에 따라 재계산하여 남편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와 아내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8) 다른 가능성으로서, 만약 아내가 남편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자기 부모에게 준 적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처가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이 남편에 의해 보고되거나 남편을 의식한 상황에서 아내에 의해 보고된다면, 아내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이 축소 보고되는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런 행동을 유도한 데는 가부장적 문화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 1절에서는 노부모 자신이 아들과 딸로부터의 소득이전을 보고한 자료를 이용해 성별 차이를 다른 각도, 즉 동일한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에서 남녀의 차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IV. 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의 결정요인

이 장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을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한 계량분석을 수행한다. KLIPS 조사의 설계구조와 사적이전 관련변수들을 최대로 활용하여, 어떤 특성을 가진 부모가 어떤 특성을 가진 자식으로부터 사적이전을 얼마나 제공받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공적이전의 수급이 사적이전 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고찰할 것이다. 이 장은 KLIPS 데이터가 분석의 기회를 제공하는 세 가지 데이터 형식, 즉 노부모의 특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한 중고령자 부가조사자료, 자식가구가 5개년에 걸쳐 어떤 식으로 소득이전을 실행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계열 가구자료, 그리고 분가자식가구와 원가구의 부모를 매치시켜 부모와 자식을 특성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연결가구자료를 차례로 사용해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1. 노부모측 관련변수 분석

여기서는 먼저 제6차 KLIPS 데이터에 포함된 중고령자 부가조사자료를 이용해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전에 영향을 주는 노부모측 관련변수를 분석한다. 중고령자 데이터는 조사대상가구의 만 50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추가설문을 제시해 획득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전에 관한 정보는 (1) 현재 가족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2) 도움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⁹⁾ 그리고 (3)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의 도움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얻어냈다.

분석에 앞서 중고령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사적이전 의존도의 실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해보자. KLIPS 중고령 응답자의 현재 소득원을 묻는 설문은 다음 9가지의 소득 종류를 제시하여 소득 유무와 월평균 액수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1) 본인의 근로소득(임금, 사업소득 등), (2) 배우자의 근로소득(임금, 사업소득 등), (3)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4) 개인연금소득(은행, 보험회사 등에 개인이 가입한 연금), (5) 저축, 주식, 보험 등과 같은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 (6) 임대수입 등 부동산소득, (7)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 등) 수급, (8)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¹⁰⁾ (9) 기타소득.¹¹⁾ 연령대별로 이러한 소득 구성과 총소득액이 어떻게

9)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주어졌다. ① 장남며느리, ② 그 외의 아들며느리, ③ 딸사위, ④ 미혼자녀, ⑤ 손자녀·배우자, ⑥ 부모, ⑦ 형제자매, ⑧ 기타.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①~④에 해당하는 소득이전을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전’으로 정의한다. ⑤의 손자녀·배우자로부터의 소득이전을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전’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달라지는지를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령화에 따라 근로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해 50대 초반에 월평균 190만원대에 이르던 근로소득(배우자 합산)이 50대 후반이 되면 120만원대로 떨어지고, 60대 초반이 되면 그 절반에 못 미치는 60만원, 60대 후반이면 30만원대, 그리고 70대 초반에는 10만원대로 떨어진다. 그런데 자산소득은 연령대와 별로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중고령 응답자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¹²⁾ 공적이전소득 역시 근로소득 격감을 보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한편, 사적 소득이전은 자식으로부터의 이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고령화에 따른 소득 저하와 함께 이전액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사적이전소득이 소득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대 초반 6%에서, 60대 후반에는 11%, 70대 초반에는 24%, 그리고 70대 후반에는 29% 수준으로까지 높아져, 노부모의 연령과 자식에 대한 생계 의존도가 비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적이전소득이 가장 많은 70대 초반의 경우에도 월평균 이전액이 15만원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노인빈곤이 해소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사적이전을 비롯한 모든 소득원을 합친 월평균 소득총액은 70대 초반에 60만원대로 떨어지고, 70대 후반에는 40만원대로 추락해 상당수의 고령응답자가 빈곤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고령자 부가조사에는 노인빈곤의 실태를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로 평가해볼 수 있는 설문이 포함되어 있다. <표 4> 하단에서 주관적 최저소득(B)은 본인(및 배우자)의 최소한

-
- 10) 본 연구에서는 8번째 소득항목인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을 ‘공공부조’의 측정변수로 사용한다.
 - 11) 기타소득과 관련해 주의할 사항은, 응답자에 따라 사적이전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보고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KLIPS 중고령자 부가조사는 조사대상가구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의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월평균 소득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해와 응답방식의 개인별 차이 때문에 전체적인 일관성을 사전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타소득이나 사적이전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787명 중 470명은 두 항목에 동일액수를 보고했고, 317명은 상이한 액수를 보고했다. 특히 두 항목에 동일액수를 보고했거나 사적이전보다 큰 기타소득을 보고한 응답자들 중에서 사적이전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보고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 항목에 상이한 액수를 보고한 317명 중 221명은 기타소득보다 큰 사적이전을 보고했기 때문에, 기타소득에서 사적이전을 일률적으로 차감한 금액을 사적이전을 제외한 기타소득으로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에서는 두 항목을 일단 별도로 간주하되, 특별한 주의를 요할 것을 밝힌다. 특히 사적이전소득이 기타소득 항목과 사적이전 항목에 중복 계산된 경우 가구 총소득이 과대 추정되고 이에 따라 빈곤율이나 빈곤갭이 과소 추정될 수 있다.
 - 12) 중고령 응답자들이 노후 생활과 관련해 현재 공적연금, 사적연금, 예금·적금, 저축성보험 등을 납부하거나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별도의 설문을 보더라도 노후대비 저축의 미비를 알 수 있다. 이 설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3%만이 그와 같은 저축 또는 투자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납부(투자)액의 평균값과 중위값은 각각 267만원과 10만원에 그쳤다. 한편 본격적인 은퇴 이전으로 볼 수 있는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42%가 노후대비 저축 또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납부(투자)액의 평균값과 중위값은 각각 317만원과 1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도의 노후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득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주관적 적정소득(C)은 본인(및 배우자)의 적정 수준의 노후 생활을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소득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 소득총액(A)과의 차이를 각각 최저소득부족액(A-B) 및 적정소득부족액(A-C)에 나타냈다. 자식에 대한 목돈 지출이 많을 50대 후반에 이미 소득은 주관적 적정소득 아래로 내려가며, 60대에 들어서면 그 갭은 40만원까지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60대부터는 소득이 주관적 최저소득보다도 낮아져 60대 후반부터는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식 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이 없었다면 이러한 소득부족액은 70대 초반에는 3배, 70대 후반에는 2배 정도 커졌을 것이다.¹³⁾

이제 월평균 소득 구성항목 중 자식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을 결정하는 노부모측 변수들을 고찰해보자.¹⁴⁾ <표 5a>에는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전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프로빗(Probit) 모형과 소득이전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토빗(Tobit) 모형의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사적이전액은 의사결정에 의해 사적이전이 제공된 경우에만 관찰할 수 있으므로 표본선택(sample selection) 문제가 존재함에 유의하자. 따라서 <표 5b>에는 Heckman(1979)이 제시한 선택편의(selection bias) 조정을 실행한 일반화된 토빗, 또는 헵킷(Generalized Tobit, or Heckit) 모형의 추정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헵킷 모형은 보통의 토빗 모형과 달리, 소득이전 실행여부 결정모형과 소득이전액 결정모형에서 설명변수의 집합이 같아야 한다는 제약과 설명변수가 두 추정모형에서 같은 부호를 가져야 한다는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보다 일반화된 모형이다. 설명변수의 집합에는 먼저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전을 제외한 다른 소득원들, 즉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자산소득(개인연금소득, 금융자산소득, 부동산소득), 공적이전(공적연금소득, 사회보험수급, 공공부조수급)¹⁵⁾ 및 자식 이외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을 넣고, 자식으로부터의 사적이전이 주고받기식의 교환행위에서 이루어지는지 보기 위해 자식에게 준 사적이전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사적이전이 노부모의 주관적 소득결핍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 주관적 최저소득과 실제소득(사적이전 제외)의 차이('주관적 최저소득부족액'으로 정의)를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또한 소속가구가 보유한 일체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주택 및 비주택부동산의 가격 또는 전세금) 가액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재산(net worth)을 계산해 설명변수로 넣음으로써 소득과 별도로 부가 사적이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했다.¹⁶⁾ 또한 사적이전 수급자의 성별, 가구주 여부, 연령 및 연령의 제곱,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13)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 단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평가한 노인빈곤의 실태는 제5장에서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14) 중고령자 데이터에서 관찰되지 않는 자식측 변수들은 자식 입장에서 부모에게 준 사적이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다음 절에서 다룰 것이다.

15) 아래의 분석에서는 월평균 공공부조수급액이 7,000만원이라고 보고한 1개 가구 2인의 이상치(outlier)를 제외했다. 그리고 앞서 각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적이전을 포함할 가능성으로 인해 사적이전과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기타소득 항목은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설명변수에서 제외했다.

16) 보유 부동산 시가총액이 범주화된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만 제시된 경우에는 각 범주의 급간 평균값을 취하여 연속형 변수로 전환한 다음에 순재산 계산에 사용했다.

여부(‘주관적 비건강상태’로 정의),¹⁷⁾ 혼인상태, 학력, 총자녀수 및 아들수, 거주지역을 통제했다. 한편 <표 5b>에서 소득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식별(identification)하는 데는 소득이전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은 설명변수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과 연령 및 가구주 여부의 교호작용(interaction) 변수들을 도입했다.¹⁸⁾

<표 4> KLIPS 중고령 응답자(만 50세 이상)의 월평균 소득 구성

(단위: 만원)

소득원	세 목	전체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근로 소득	소 계	87.7	192.5	126.3	60.9	35.2	13.4	3.1
	본 인	53.2	113.8	77.2	36.5	25.1	8.8	1.7
	배우자	34.5	78.8	49.2	24.5	10.1	4.5	1.4
자산 소득	소 계	8.4	6.9	8.7	11.2	11.0	6.5	4.6
	개인연금	0.2	0.0	0.2	0.1	0.5	0.6	0.0
	금융자산	2.3	2.9	2.3	2.8	2.4	1.6	1.2
공적 이전	부동산	5.9	3.9	6.3	8.3	8.1	4.3	3.4
	소 계	6.5	2.3	4.4	9.1	10.4	9.4	6.2
	공적연금	4.8	1.5	3.3	7.1	9.0	6.2	3.2
사적 이전	사회보험	0.8	0.6	0.7	1.4	0.2	0.8	0.9
	공공부조	1.0	0.3	0.4	0.6	1.2	2.4	2.1
	소 계	6.8	1.8	3.7	6.0	8.6	14.9	13.1
기타소득	자 식	6.7	1.7	3.6	5.9	8.5	14.7	13.0
	자식이외	0.1	0.1	0.0	0.1	0.0	0.3	0.1
	소 계	8.5	3.0	4.1	6.7	10.0	19.1	17.8
소득총액(A)		117.9	206.4	147.2	94.0	75.1	63.3	44.9
주관적 최저소득(B)		98.8	127.6	112.0	101.1	87.1	71.1	59.5
최저소득부족액(A-B)		19.0	78.8	35.2	-7.1	-12.0	-7.8	-14.6
주관적 적정소득(C)		132.7	172.4	150.6	131.7	115.2	97.7	84.2
적정소득부족액(A-C)		-14.9	34.0	-3.4	-37.7	-40.1	-34.4	-39.3
관측수 (단위: 명)		3,487	741	697	659	554	397	439

주: 모든 금액은 제6차 KLIPS 조사에 적용된 개인별 가중치를 반영한 것임.

자료: 제6차 KLIPS 중고령자 부가조사 데이터에서 필자가 계산.

17) 다중회귀분석 모형에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및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점검한 결과, 이런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사적이전소득 변화의 곡선형태(profile)를 추정하기 위해 설명변수로 동시에 포함한 연령과 연령의 제곱 사이의 높은 상관성은 물론 논외로 한다.

18) <표 5a>의 프로빗 모형을 2단계 추정에 그대로 사용하면 극단적인 다중공선성과 추정의 불안정성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교호작용 변수를 추가한 모형설정(specification)이 식별 문제에 대한 만족스런 해결책은 아니지만, 소득이전여부 결정모형에만 분명히 포함되고 소득이전액 결정모형에는 포함되지 않는 명시적인 변수들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사실 이 문제는 일반화된 토빗 모형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한계이다. Cox and Jakubson(1995)와 강성진·전형준(2005)도 교호작용 변수를 1단계 추정에 이용했다.

<표 5a>의 프로빗 모형과 토빗 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5b>의 1단계 추정결과(소득이전 여부 결정)와 2단계 추정결과(소득이전액 결정)와 각각 상당히 합치하고 있기 때문에, <표 5b>의 소득이전액 모형 추정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우선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전이 부모의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면, 소득이전액은 부모의 소득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각 소득항목 중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전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사적이전 수급액의 추정치는 본인의 근로소득이 1만원 증가할 때 수급액이 약 2천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만원 증가할 때 수급액이 약 3천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한 일대일 대체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개인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 및 부동산소득, 그리고 자식 이외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소득이전은 자식으로부터 받은 소득이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공적연금소득과 사회보험수급액, 그리고 공공부조수급액은 사적이전액과 음의 상관관계를 드러냄으로써 공적이전이 사적이전을 구축한다는 전통적인 가설을 지지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공공부조수급은 모든 소득구성원 중 사적이전수급과 가장 큰 대체관계를 보여, 급여액의 1만원 증가는 대략적으로 자식으로부터 받는 소득이전액의 1만원 감소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이러한 공공부조와 사적이전의 대체관계가 공공부조의 사적이전 구축을 의미하는지, 반대로 사적이전의 공공부조 구축을 의미하는지 그 인과성(causality)은 사전적(ex ante)으로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공부조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보충급여 성격을 갖고 있는데, 소득인정액에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적이전을 더 받는 만큼 급여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¹⁹⁾

이와 관련된 것이지만, 사적이전 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실증모형 분석에 앞서 점검해야 할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현실적 인과성의 문제로서, KLIPS 데이터에서 보고된 사적이전액과 공공부조액 중 무엇이 무엇을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는지의 문제다. 둘째, 측정오차의 문제로서, KLIPS 응답자들이 설문에 답할 때 사적이전소득의 노출을 꺼려 축소 보고하지는 않았는지의 문제다.

19) 2006년 10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여기서 실제소득에 포함되어 조사대상이 되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여타 공적이전소득 등의 기타소득이다.)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2002년까지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금액기준 및 실물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3개 기준이었다가 2003년부터는 재산의 실물기준(주택, 농지, 승용차)이 폐지되고 금액기준만 소득환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 안에 소득평가액과 함께 합산되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되었다. KLIPS 중고령자 부가조사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바뀐 2003년에 실시되어, 여기 보고된 공공부조수급이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사적이전소득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선정기준 변화 전후가 동일하다. 재산의 소득환산방식(2003년 기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V장을 참조하라.

우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황적 추측이 가능하다. 전술했듯이, KLIPS 중고령 응답자들이 받은 사적이전은 “현재 가족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도움을 받을 경우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라는 현재진행형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보고된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공공부조는 한번 결정되면 상당 기간 안정적인 월수입이 되기 때문에, KLIPS 응답자들이 설문조사 시점에서 현재 제공받고 있다고 보고한 사적이전은 이들이 받고 있는 공공부조 급여액이 결정된 시점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부조는 KLIPS 응답자들이 자식들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만약 그 역이 성립하려면 매 시기 공공부조 급여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적이전 액수가 사실대로 파악된다는 가정이 필수적인데, 주지하듯이 수급권자가 자식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이 공공부조 급여를 책정할 때 실제로 파악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며, 나아가 사적이전의 변동이 있을 때 공공부조 급여가 이에 맞게 조정된다고 보는 것은 공공부조제도의 운영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조사방법은 전산조사(국세청 종합소득 등), 금융재산조사(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출자 대상), 그리고 전산자료의 한계가 있는 경우 실시되는 실태조사 등인데, 자식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이 정확히 모니터 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사적이전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당사자의 성실신고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보충급여방식에서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사적 소득이전을 누락 보고할 유인(incentive)을 갖는다. 이처럼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로 받고 있는 경제적 도움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 심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사적이전의 크기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근거로 한다.²⁰⁾ 이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실제 사적이전이 전무하더라도 수급권에서 배제된다. 또한 부양능력이 전무하지는 않지만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준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의 일정부분이 피부양 노부모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하고(이른바 ‘간주부양비’), 피부양자의 최저생계비 부족분과 간주부양비의 차액만큼만 급여로 제공하는 실정이다.²¹⁾ 이상과 같이 KLIPS 중고령자 부가

20)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A,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B라 할 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A+B) \times 120\%$ (2006년 7월부터 130%)보다 크면 ‘부양능력 있음,’ 이보다 작고 $B \times 120\%$ 보다 크면 ‘부양능력 미약,’ 그리고 $B \times 120\%$ 에도 미치지 못하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한다. 한편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에 있어서는 수급권자 가구 기초공제액의 2.5배를 적용하고, 모든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간주해 환산율 4.17%를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등 보다 완화된 기준을 사용한다. 이렇게 계산된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 \times 42\%$ 보다 큰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한다.

21) 간주부양비 책정은 상당히 자의적일뿐더러 노부모에 대한 평균적인 소득이전의 현실과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KLIPS 중고령자 부가조사가 실시된 2003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준으로 할 때 부양의무자인 4인 가족의 아들가구가 2인 가구의 노부모에 대해 ‘부양능력 미약자’로 분류되는 월 소득기준은 122만원(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93만원(수급권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합 120%)이며 재산은 9,870만원(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와

조사에서 사적이전이 보고된 방식과 공공부조제도의 운영 실태를 감안할 때, 공공부조급여가 사적이전소득의 존재를 파악한 후에 책정되었을 것이라는 가정보다는, 이미 수급중인 공공부조급여가 있는 상태에서 자식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좀 더 현실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 사용된 추정모형은 사적이전을 종속변수로, 공공부조수급을 설명변수로 사용했다.

그리고 두 번째 측정오차 문제는 KLIPS 데이터 내에서 어느 정도 점검해볼 수 있다. 중고령 KLIPS 응답자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보고한 사적이전 수급액(월평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특히 축소 보고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III장에서 가구별 응답자들이 자식의 입장에서 보고한 사적이전 제공액(연간)으로부터 평균적인 부모가 받았을 월평균 수급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해 비교해보자. 사적이전의 제공자(donor)가 보고한 정보에서 추정한 평균 수급액은, 사적이전의 수급자(recipient)가 보고한 평균 수급액보다 일반적으로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²²⁾ III장의 <표 3>에는 남편의 부모에게 제공된 사적이전과 아내의 부모에게 제공된 사적이전의 통계가 각각 보고되어 있는데, 중고령자 부가조사가 실시된 6차 조사년도의 통계를 이용하기로 한다. 중고령자 부가조사 응답자 중 소득이전을 실행한 성인자식이 있는 부모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만 60세 이상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해보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들이 <표 3>에서 부모에게 소득이전을 실행한 자식들의 부모와 같은 특성을 가졌다는 가정 하에서 자식들이 보고한 사적이전액과 이들이 받았다고 보고한 사적이전액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들이 가진 아들수의 평균값에 <표 3>에서 남편 부모에게 제공했다고 보고된 사적이전의 빈도와 평균금액을 곱해서 얻은 181만원($= 2.21 \times 0.598 \times 1,395,000$ 원)과 딸수의 평균값에 아내 부모에게 제공했다고 보고된 사적이전의 빈도와 평균금액을 곱해서 얻은 86만원($= 2.16 \times 0.498 \times 866,000$ 원)을 더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약 23만원이라는 월평균 사적이전소득의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중고령자 부가조사에서 현재 자식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고한 응답자의 비율은 19.7%였으며, 이들의 월평균 사적이전 수급액은 약 34만원(중위 수급액은 25만원)이었다. 따라서 중고령자 부가조사에서 수급자 입장으로 보고된 사적이전소득이 제공자의 정보에서 얻은 추정치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42%인 수준) 이하인데, 이 때 간주부양비는 아들가구의 순소득에서 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뺀 값의 40%로 책정된다. 즉 아들가구가 4인 가족으로 190만원의 월 소득이 있으면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02만원을 뺀 금액의 40%인 월 35만2천원(연간 422만4천원)을 부양비가 노부모에게 제공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를 III장의 <표 3>에서 남편이 자신의 노부모에게 제공했다고 보고한 소득이전액의 평균값(소득이전을 실행한 경우에 한정해 계산한 평균값도 연간 140만원)과 비교하면 간주부양비가 과중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진호 외(2004)에 수록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부양능력 미약가구의 실제부양비는 대체로 간주부양비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양여력이 거의 없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비현실적인 간주부양비가 부과된 경우, 실제로 부양비가 그 만큼 제공되지 않는다면 수급권자의 생계보호가 되지 않고, 만약 부과가 강제된다면 부양의무자까지 궁핍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22) 사적이전 데이터의 측정오차, 특히 수급자의 축소 보고(under-report) 경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급액 통계와 제공액 통계의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는 Gale and Scholz(1994) 또는 Brown and Weisbenner(2002)를 참고하라.

난 것을 볼 수 있다.²³⁾ 보다 나은 추정방법을 동원해 비교해볼 수 있겠지만, 우선 이것으로 사적이전소득의 축소 보고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²⁴⁾

이제 다른 설명변수들을 추정한 결과를 통해 사적이전의 추가적인 결정요인들을 살펴보자. 첫째, 자식에게 준 사적이전은 자식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자식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은 주로 이타적 동기, 즉 노부모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교환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금전적 교환 관계라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교환(예컨대 노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봐주기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²⁵⁾ 둘째, 주관적 최저소득부족액은 사적이전액과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써 자식이 부모가 느끼는 소득결핍을 상당히 완화하는 경제적 보조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순재산은 자식이 소득이전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일단 소득이전을 행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전액의 크기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²⁶⁾ 넷째, 사적이전 수급자의 연령과 연령의 제곱항의 추정치를 통해 극대점을 계산하면, 자식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이 75세를 전후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4>에서 관찰한 사적이전소득의 연령별 패턴과 부합하는 것이다. 다섯째, 본인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배우자를 사별해 혼자된 경우에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전액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23) 사적소득이전에 관한 질문방식의 차이에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을 수 있다. <표 3>의 사적이전 제공액 통계는 지난 1년간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여부와 그 액수를 묻는 질문으로부터 도출한 것인데, 여기에는 부모에게 제공한 일회성의 용돈이나 선물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연간이전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소액으로 바뀌는 사적이전도 이전액의 평균 계산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중고령 응답자들이 보고한 사적이전 수급액 통계는 현재 자식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와 월평균 도움 받는 액수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 용돈이나 선물 같은 것만을 받은 경우는 이전액의 평균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평균이전액이 큰 값으로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4) 한편 <표 3>에 나타난 성별 차이는 아내가 자기 부모에게 준 사적이전을 축소 보고한 측정오차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정 하에 성별 구분 없이 추정한 월평균 사적이전소득은 약 30만원($= (2.21 + 2.16) \times 0.598 \times 1,395,000 / 12$)인데, 이는 중고령자 부가조사에서 부모에 의해 보고된 금액 34만원에 상당히 근접한 값이다.

25) 이 추측은 본 장의 2절과 3절에서 설명변수에 자식가구의 특성이 포함된 모형의 추정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26) <표 5a>의 토빗 모형에서는 순재산이 프로빗 모형에서와 같이 음의 추정계수를 나타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표 5b>의 일반화된 토빗 모형에서는 소득이전여부 추정식과 소득이전액 추정식에서 설명변수가 같은 부호를 가져야 한다는 제약을 두지 않는데, 그 결과 이전액 결정모형에서 순재산은 양의 계수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재산이 많은 부모에게 소득이전을 할 필요성(빈도)은 줄어들지만, 일단 소득이전을 할 경우 너무 소액이면 곤란해지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부자집 혼사일수록 적은 축의금을 내밀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재산이 많은 부모에게 향후 역방향의 대규모 소득이전(큰 금액의 증여나 상속)을 기대하고 전략적으로 소득이전을 행하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전략적 행위에 대한 분석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는다.

이는 사적이전의 이타적 동기를 재확인해준다. 여섯째, 소득과 기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학력은 사적이전에 유의한 효과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자녀수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사적이전 수급액은 4~5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변수로 추가된 아들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소득이전액의 크기는 자식수가 같을 경우 자식들의 성별 구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의미한다.²⁷⁾ 이 발견은 남편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이 아내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보다 크게 보고된 <표 3>의 결과를 받아들임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²⁸⁾ 마지막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교해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더 많은 사적이전을 받고, 그 외의 지방(강원·경상·충청)에 거주하는 부모는 더 적은 사적이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와 별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하의 분석에서 지역적 차이를 염두에 두는 것에 한정하려고 한다.

27) 이 추정결과를 따른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에서 부양의무자로서 아들과 딸에 차별을 두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수급자 선정기준만 보면, 출가한 딸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의무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상인 아들이 없는 노부모는 수급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

28) 물론 <표 3>의 결과는 다른 특성이 통제되지 않은 기초통계량일 뿐이며 각기 다른 특성을 가졌을 남편의 부모와 아내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부모가 자기의 아들과 딸로부터 받은 소득이전을 분석한 <표 5a> 및 <표 5b>의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KLIPS 중 고령자 부가조사의 원자료가 보여주는 기초통계량을 해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가족 중 누구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장남과 며느리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2%, 도움 받는 액수의 평균값[중위값]은 23만4천원[16만5천원]이었는데, 딸과 사위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4%, 도움 받는 액수의 평균값[중위값]은 17만6천원[10만원]으로 조사되어, 적지 않은 성별 차이와 형제간 서열의 차이가 느껴진다. 그런데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장남과 딸을 모두 가진 부모의 경우로 한정해 장남과 딸을 비교하면, 도움 받는 액수의 평균값[중위값]은 장남의 경우 15만5천원[10만원], 딸의 경우 13만4천원[10만원]으로 그 차이가 상당히 줄어든다. 결국 성별이나 서열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에 있어 딸의 역할이 아들의 역할보다 현저하게 작다고 단언하기는 힘든 것이다. 성별이나 서열의 차이가 노부모 부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은 상세 정보가 있는 형제자매(sibling) 데이터를 구축해, 형제자매들 사이의 교육수준과 소득 및 재산 등의 차이를 통제할 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5a> 사적이전의 노부모측 관련변수 (I): ProbitTobit 모형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전	(1) Probit: 소득이전여부		(2) Tobit: 소득이전액(월평균)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절 편	-10.2075	1.6475 ***	-517.3778	79.6205 ***
현재소득원 (월평균)				
본인 근로소득	-0.0064	0.0022 ***	-0.2477	0.0514 ***
배우자 근로소득	-0.0057	0.0014 ***	-0.3278	0.0552 ***
개인연금소득	-0.0038	0.0052	-0.1830	0.4238
금융자산소득	-0.0051	0.0030 *	-0.1160	0.1446
부동산소득	-0.0016	0.0014	-0.0426	0.0794
공적연금소득	-0.0043	0.0016 ***	-0.1873	0.0800 **
사회보험수급	-0.0252	0.0070 ***	-1.0596	0.5573 *
공공부조수급	-0.0292	0.0108 ***	-1.4812	0.5331 ***
자식이외로부터의 소득이전	-0.0179	0.0149	-0.8668	0.9374
자식에게 준 사적이전	0.0020	0.0032	0.0731	0.1686
주관적 최저소득부족액	0.0020	0.0007 ***	0.1885	0.0301 ***
순재산	-0.0036	0.0015 **	-0.0889	0.0800
여 성	0.1640	0.1088	3.7434	5.1888
가구주	0.8593	0.0990 ***	38.5022	4.7314 ***
연 령	0.2294	0.0472 ***	11.7468	2.3007 ***
연령제곱	-0.0015	0.0003 ***	-0.0775	0.0165 ***
주관적 비건강상태	0.1082	0.0677	4.7094	3.2472
혼인상태 (비교대상: 배우자와 동거)				
이 혼	-0.6646	0.4157	-33.7666	24.7944
별 거	0.3233	0.2030	12.8677	11.0124
사 별	0.3863	0.0900 ***	12.9802	4.6490 ***
학력 (비교대상: 고졸미만)				
고 졸	-0.0028	0.0976	-1.2473	4.8616
고졸후 추가교육	0.0006	0.1565	0.4236	6.6534
총자녀수	0.1225	0.0251 ***	5.0467	1.2538 ***
아들수	0.0133	0.0361	0.3323	1.7193
거주지역 (비교대상: 수도권)				
강 원	-0.3436	0.1937 *	-21.2535	10.1112 **
경 상	-0.0882	0.0756	-9.5033	3.7619 **
전 라	0.3914	0.0932 ***	11.9197	4.6862 **
충 청	-0.1871	0.1261	-15.1799	6.1183 **
관측 수	3107		3107	
R2	0.2918		0.0909	
Log Likelihood	-1080.73		-3875.44	

주: 모든 금액은 만원 단위임. 단, 순재산은 천만원 단위임.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제6차 KLIPS 중고령자 부가조사 데이터.

<표 5b> 사적이전의 노부모측 관련변수 (II): Generalized Tobit (Heckit) 모형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전	(1) 소득이전여부		(2) 소득이전액 (월평균)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절 편	-10.0636	1.6506 ***	-416.0485	71.7788 ***
현재소득원 (월평균)				
본인 근로소득	-0.0046	0.0010 ***	-0.1992	0.0507 ***
배우자 근로소득	-0.0060	0.0010 ***	-0.2835	0.0603 ***
개인연금소득	-0.0047	0.0089	-0.1261	0.4407
금융자산소득	-0.0027	0.0029	0.0124	0.1575
부동산소득	-0.0011	0.0015	-0.0379	0.0773
공적연금소득	-0.0035	0.0015 **	-0.1636	0.0710 **
사회보험수급	-0.0215	0.0111 *	-0.3466	0.5387
공공부조수급	-0.0301	0.0105 ***	-1.0561	0.5023 **
자식 이외로부터의 소득이전	-0.0203	0.0183	0.0947	0.8848
자식에게 준 소득이전	0.0003	0.0033	0.1649	0.1711
주관적 최저소득부족액	0.0033	0.0006 ***	0.1982	0.0282 ***
순재산	-0.0027	0.0015 *	0.1412	0.0825 *
여 성	0.8237	0.2850 ***	6.5374	4.5940
가구주	0.9870	0.2585 ***	35.3709	4.1416 ***
연 령	0.2227	0.0473 ***	9.2173	2.1195 ***
연령제곱	-0.0014	0.0003 ***	-0.0607	0.0155 ***
주관적 비건강상태	0.0590	0.0635	5.6188	3.0709 *
혼인상태 (비교대상: 배우자와 동거)				
이 혼	-0.6022	0.4571	-31.9722	22.0089
별 거	0.2467	0.2044	7.4516	9.8146
사 별	0.2733	0.0877 ***	8.4643	4.2405 **
학력 (비교대상: 고졸미만)				
고 졸	-0.0529	0.0937	0.2475	4.7188
고졸후 추가교육	-0.0447	0.1240	6.4597	6.1120
총자녀수	0.0914	0.0236 ***	4.3485	1.1422 ***
아들수	0.0030	0.0374	0.2817	1.7130
거주지역 (비교대상: 수도권)				
강 원	-0.4216	0.1902 **	-15.9367	9.3306 *
경 상	-0.1795	0.0693 **	-8.4623	3.3948 **
전 라	0.2513	0.0875 ***	8.6043	4.1842 **
충 청	-0.2892	0.1158 **	-13.5294	5.7258 **
여성 × 연령	-0.0101	0.0031 ***		
여성 × 가구주	-0.1617	0.1100		
가구주 × 연령	-0.0024	0.0026		
관측수			3107	
Log Likelihood			-3785.38	

주: 모든 금액은 만원 단위임. 단, 순재산은 천만원 단위임.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제6차 KLIPS 중고령자 부가조사 데이터.

2. 자식측 관련변수 분석

이제 여기서는 노인에 대한 사적이전의 주공급원인 자식의 입장에서 사적이전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것인데, 이는 사적이전의 수급자인 노부모측의 결정변수를 분석한 앞 절의 내용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먼저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에 관한 정보가 부모의 보고(제6차 중고령자 부가조사항목)를 통해 얻어진 앞 절과는 달리, 자식가구의 보고(제4차 조사부터 가구별 조사항목에 포함)를 얻어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²⁹⁾

2006년 현재, 4차부터 8차까지 5개년(2000~2004년)에 걸쳐 제공한 사적이전에 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 먼저 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이 얼마나 지속적인지 살펴보자. <표 6>은 5년간 비동거 노부모(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소득이전을 실행한 햇수를 정리한 것이다. 5년간 부모에게 전혀 소득이전을 실행하지 않은 가구는 22.8%에 그치고, 3개년 이상 소득이전을 실행한 가구가 32.1%에 달하며, 매년 거르지 않고 소득이전을 실행한 가구도 8%에 이른다.³⁰⁾ 5년간 소득이전총액은 1개년만 제공한 가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120만원이며 중위값은 50만원인 데 비해, 제공햇수가 늘어날수록 단순히 산술비례하지 않고 한계이전액이 체증하는 경향을 보여, 매년 소득이전을 실행한 가구의 이전총액은 평균적으로 약 895만원, 중위값은 580만원에 달한다. 이는 부모가구에 비해 자식가구의 소득이 높고 부모가구가 일상적인 소득보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소득이전이 지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년간 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을 제공한 햇수별로 자식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고 순재산이 많으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자식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정기적인 소득이전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앞 절에서 관찰된 지역별 차이를 자식가구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강원권에서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삼남지방, 특히 호남권에서 상대적으로 잦은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발견된다.

이제 제4차~8차 KLIPS 데이터를 이용해 자식가구의 어떤 특성에 의해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의 크기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KLIPS 데이터에서 응답자의 부모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으로 수집되어, 아버지의 학력과 응답자가 14세였을 당시 아버지의 직업(아버지가 없었을 경우 어머니에 관한 해당 정보)만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제한된 부모의 정보를 통제변수로 이용하는 대신, 본 연구에서는 5개년에 걸친 다시점 자료의 특성을 이용해 시간불변적인 가구의 특성 일체를 통제하려고 한다. 즉 가족특수적 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을 분석에 이용함으로써, 부모가구의 시간불변적인 특성은 물론 자식가구의 관찰되지 않은 시간불변적인 특성까지 통제한 추정치를 계산하려는 것이다. 또한 가구주와 배우자 각각의 부모, 즉 양가의 노부모에 대해 사적이전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의 자식측 결정요인을 탐구하는 본 절의 분석에서는 양가 부모에게 제

29) 이미 <표 1>과 <표 3>에서 제4~8차 조사에 나타난 사적이전에 관한 기본통계는 언급되었다.

30) 5개년 가구자료 중에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해당 질문에 결측치가 보고된 연도가 있는 가구의 경우 해당 연도에는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했는데, 실제로는 소득이전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실제 소득이전의 지속성은 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공한 연간 사적이전액을 종속변수로 삼을 것이다.

<표 6> 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의 지속성(2000~2004년)

5년간 소득이전 실행 했수	0개년	1개년	2개년	3개년	4개년	5개년
전체 가구 비율 (%)	22.8	26.0	19.2	13.7	10.4	8.0
평균 소득이전총액 (만원)	0	119.6	259.0	405.0	550.5	895.1
중위 소득이전총액 (만원)	0	50	145	260	382.5	580
자식가구의 특성						
가구소득 (만원)	2624 [2200]	2879 [2408]	3081 [2540]	3352 [2804]	3496 [2988]	4170 [3475]
순재산 (만원)	82262 [8200]	63078 [7736]	57571 [7833]	65285 [9942]	75810 [11197]	77911 [12675]
가구주 연령	46.4	42.6	44.7	44.6	44.3	44.0
가구원수	3.4	3.3	3.4	3.6	3.7	3.8
미성년자녀수	0.8	0.8	1.0	1.0	1.1	1.4
지역별 소득이전 지속성 (%)						
수도권 (2,306가구)	24.2	27.1	19.0	13.2	9.0	7.6
강 원 (101가구)	40.6	24.8	19.8	7.9	5.0	2.0
경 상 (1,274가구)	22.8	25.6	19.2	13.5	11.6	7.4
전 라 (444가구)	16.7	22.8	19.8	16.0	12.6	12.2
총 청 (383가구)	17.0	24.8	20.1	15.1	13.6	9.4

주: 자식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5개년 관측치 평균의 가구 평균값[중위값]임. 분석에 이용된 총 가구수는 4,511가구(제주지역 3가구 포함)이며, 결측치를 제외한 총관측수는 14,319개임.

자료: 제4차~8차 KLIPS 데이터에서 필자가 계산함.

<표 7>은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매년 개별 자식가구의 시간가변적인 특성이 변화할 때 양가 부모에게 제공한 사적이전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사적이전액의 크기는 가구소득이나 순재산이 늘어난 해에 소폭 커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반응도는 크지 않았다. 예컨대 연간 가구소득의 1백만원 변화에 대해 사적이전액은 8천원 가량밖에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³¹⁾ 그런데 가구소득의 내역을 오른쪽 열에서와 같이 분해해보면 근로소득은 자산소득이나 여타소득에 비해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³²⁾ 또한 월평균 생활비가 높게 보고되었던 해에 양가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내역을 오른쪽 열에서처럼 분해해보면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은 외식비, 사교육비 및 차량유

31) 금액변수의 로그변환을 통해 계산해본 사적이전액의 가구소득 탄력성도 0.1 정도로 매우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사적이전이 근로소득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소수의 가구(13.2%)만 자산소득이 있었다고 보고한 데 반해 근로소득은 거의 모든 가구에서 보고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가계지출의 근간을 이루며, 근로소득의 상승은 대개 승급이나 승진 등을 기반으로 해 지속적인 소득상승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지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들 소비항목이 생활수준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양가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은 자식가구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큰 금액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은 가구주의 연령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³³⁾ 미성년자녀수가 많을수록 큰 금액으로 제공되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배우자와 동거하던 경우에 비해 이혼한 경우에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이혼이 부모의 비경제적 도움(예컨대 살림이나 육아 보조)에 대한 수요를 낳거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는 상황으로 이끌어, 이에 대한 대가로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둘째, 부부간에 각자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에 대해 배우자의 눈치를 보던 시기보다 이혼과 함께 자기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을 독자적인 결정으로 행할 수 있게 된 시기에 소득이전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³⁴⁾ 특히 종속변수가 양가 부모에게 제공한 소득이전의 총액인데, 이혼 후에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은 중단되고 자기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만 종속변수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배우자와 동거하던 시기에는 ‘상호견제’ 또는 ‘자제’의 동기가 작용해 개인적으로 소망스러운 수준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자기 부모에게 제공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각자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을 놓고 부부가 처하는 전략적인 상황은 향후 별도로 연구해볼만한 주제인데, 다음 절의 분석에서는 양가 부모에 대한 ‘형평’의 동기 또한 부부간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3. 노부모와 분가자식가구 분석

앞서 본 장의 1절에서는 사적이전에 미치는 노부모의 특성을 분석하고 2절에서는 자식의 특성을 분석했는데, 여기서는 노부모와 자식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모형에서 사적이전의 관련변수를 분석해본다. 1절의 분석은 종교령자 부가조사를 이용해 노부모에 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고 사적이전이 수급자인 노부모에 의해 월평균 금액으로 보고된 자료를 사용했다. 그리고 2절에서는 5년간의 사적이전이 제공자인 자식에 의해 연간 이전액으로 보고된 시계열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관측되지 않은 시간불변적·가족특수적 요인을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절과 앞 절들의 분석은 어느 쪽이 우월하다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다.

전술했듯이 KLIPS 데이터에서는 응답자의 부모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5,000세대 KLIPS 원가구에서 분가한 자녀가구를 해마다 추적하고 있는 조사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분가가구의 성인자녀와 전출 원가구의 노부모를 매치한 연결가구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사적이전에 관한 설문은 가구주 부모와 배우자 부모에 대해 별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가구의 가구원 출신인 자식이 분가가구에서 가구주인지 배우자인지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Ⅲ장의 <표 3>에서 관찰했듯이 남편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이 아내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보다 좀 더

33) 따로 보고하지 않았지만 연령의 제곱항에 대해서는 음의 추정계수를 얻을 수 있었는데, 자녀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대략 60세일 때까지는 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이 늘어나다가 그 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34) 두 가설은 서로 배제적인 것이 아니며 현상의 배후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것일 수 있다.

많은 가구에서 좀 더 큰 액수로 보고되었고, 본 장의 1절에서 보았듯이 후자의 경우 축소 보고에 의한 측정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가구의 가구원 출신이 분가가구의 가구주인 표본만 추려내었다.³⁵⁾ 따라서 원가구의 가구원 출신이 분가가구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대부분의 경우 딸이 결혼 후 원가구에서 분가한 사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5) 여성 가구주의 존재를 감안하면 분가가구의 가구주 여부와 상관없이 원가구의 아들이 분가한 경우를 표본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내용이 여성 가구주에 의해 보고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적이전액 결정모형의 추정에 필요한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성별에 관계없이 분가가구의 가구주가 원가구의 가구원인 표본을 선택했다. 참고로 본 절의 분석에 사용된 연결가구표본에서 분가가구의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는 20.9%에 달했다.

<표 7> 사적이전의 자식측 관련변수: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

양가 부모에게 제공한 연간 소득이전액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연간 가구소득	0.008	0.001 ***		
총근로소득			0.013	0.002 ***
총자산소득			-0.002	0.003
기타 가구소득			0.007	0.004 *
보호대상가구	-8.709	19.704	-5.473	19.721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연간 소득이전액	0.028	0.013 **	0.027	0.014 **
순재산	0.041	0.022 *	0.038	0.022 *
월평균 저축액	-0.018	0.027	-0.027	0.027
월평균 생활비	0.214	0.048 ***		
식비			-0.180	0.185
외식비			1.221	0.376 ***
공교육비			0.189	0.144
사교육비			0.268	0.140 *
차량유지비			0.654	0.193 ***
주거비			0.165	0.278
경조사비			0.034	0.457
보건의료비			-0.005	0.034
문화비			-0.268	0.374
내구재			-0.233	0.227
통신비			-0.109	0.475
기타 생활비			0.000	0.000
가구주 연령	6.616	2.165 ***	6.882	2.120 ***
혼인상태 (비교대상: 배우자와 동거)				
미혼	-6.561	6.916	-5.415	6.955
이혼	128.430	48.539 **	115.597	48.536 **
별거	83.377	41.936 *	78.495	41.940 *
사별	16.246	56.154	-5.818	56.406
미성년자녀수	11.843	5.673 *	11.396	5.899 *
절편	-256.289	92.497 ***	-267.437	91.560 ***
관측수		6435		6428
가구수		2110		2110
가구당 관측수: 최소/평균/최다		2/3/5		2/3/5
R2				
가구내		0.038		0.047
가구간		0.019		0.027
전체		0.020		0.027

주: 모든 금액은 만원 단위임. 단, 순재산은 천만원 단위임. 회귀분석에서 일부 변수들의 이상치(outlier)를 다음과 같이 제거했음. 부모에게 준 연간 소득이전액은 2억원 이상의 값, 부모로부터 받은 연간 소득이전액은 1억원 이상의 값, 순재산은 음의 값과 1백억원을 넘는 값을 제외시킴.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제4차~8차 KLIPS 데이터

사적이전에 관한 설문은 포함된 제4차 조사부터 제8차 조사까지 진행되는 동안 분가를 통해 새로운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주가 된 자식과 계속 조사되고 있는 원가구의 부모를 매치한 자료에서

관련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것을 제외한 후 총 613개의 관측치를 얻었으며, 이 중 354개의 관측치에서 양의 사적이전이 보고되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 자식의 특성과 부모의 특성을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고려한 사적이전액의 결정모형을 토빗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가 <표 8>에 보고되어 있다.

<표 8> 분가자식 가구주의 부모가구에 대한 소득이전: Tobit 모형

가구주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액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가구주 부모로부터의 소득이전액	-0.021	0.022	-0.025	0.021
배우자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액	0.849	0.136 ***	0.839	0.134 ***
배우자 부모로부터의 소득이전액	0.078	0.105	0.119	0.104
분가 자식가구의 특성				
연간 가구소득	0.019	0.006 ***	0.017	0.006 ***
순재산	0.150	0.092	0.170	0.091 *
월평균 저축액	0.491	0.155 ***	0.544	0.154 ***
월평균 생활비	0.190	0.183	0.273	0.181
가구주 연령	5.304	2.771 *	7.848	2.819 ***
여성 가구주	0.143	27.432	14.448	27.616
배우자와 동거	18.295	43.889	71.518	45.686
가구원수	-111.543	33.487 ***	-133.273	33.956 ***
미성년자녀수	165.652	37.791 ***	182.174	38.191 ***
거주지역 (비교대상: 수도권)				
강 원			82.630	91.421
경 상			-55.043	48.981
전 라			-151.542	60.346 **
충 청			-33.764	47.940
가구주 부모가구의 특성				
연간 가구소득	-0.014	0.006 **	-0.015	0.006 **
순재산	-0.104	0.047 **	-0.113	0.047 **
월평균 저축액	0.011	0.185	0.045	0.184
월평균 생활비	-0.031	0.183	-0.012	0.181
가구주 연령	-0.794	1.183	-1.058	1.180
여성 가구주	90.342	50.634 *	80.754	50.722
배우자와 동거	106.008	46.811 **	85.009	46.717 *
가구원수	-15.244	10.779	-11.393	10.735
거주지역 (비교대상: 수도권)				
강 원			102.122	105.319
경 상			56.471	46.651
전 라			218.397	57.569 ***
충 청			127.744	44.945 ***
절 편	-160.667	130.545	-255.601	133.653 *
관측수	613		613	
가구주 부모에게 소득 이전한 가구수	354		354	
Log Likelihood	-2573.9		-2560.9	
Pseudo R2	0.037		0.041	

주: 모든 금액은 만원 단위임. 단, 순재산은 천만원 단위임. 조사년도 더미변수들은 모형에 포함되었으나 표에서 추정치 표시는 생략함.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제4차~8차 KLIPS 데이터

첫째, 가구주 부모에게 제공한 사적이전은 가구주 부모로부터 받은 사적이전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자식 간에 금전적인 교환관계가 주된 이전 동기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둘째, 자식가구의 가구원수가 많으면 사적이전이 줄어들지만(소득이전 여력의 감소) 이 중 미성년자녀수가 많으면 사적이전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교환 동기가 있다하더라도 부모가 어린 손자녀를 돌봐주는 데 대한 보상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사적이전이 부모의 경제력(가구소득과 순재산으로 측정)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자식의 경제력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사적이전이 부모의 소득 보전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소득 불균형 완화를 목적으로 한 이타적 동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재차 뒷받침한다. 그러나 부모 및 자식 소득에 대한 사적이전의 탄력성은 역시 매우 낮은 편이다.

넷째, 배우자 부모와 주고받은 사적이전을 통제변수로 넣었을 때, 배우자 부모에게 제공한 사적이전액이 가구주 부모에게 제공한 사적이전액과 매우 큰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부부가 양가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에 있어서 형평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가한 자식과 분가 부모의 거주지를 설명변수에 추가해보면, 사적이전이 활발한 호남권의 특성이 재확인된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호남권에 거주하는 부모는 수도권에 비해 연평균 약 220만원 많은 사적이전을 자식으로부터 받는다. 그러나 자식이 호남권에 사는 경우에는 수도권에 비해 연평균 약 150만원 적은 소득이전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에서는 분가가 호남권에 있는 경우 분가한 자식은 대부분 호남권(76%) 아니면 수도권(23%)에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추정치를 재해석해보면 호남권의 부모는 자식이 호남권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사는 자식을 둔 수도권의 부모에 비해 여전히 연평균 약 70만원 많은 사적이전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 특히 호남권의 특성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업화가 늦었고 농촌문화와 자식의 노부모 부양관습이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전라도의 산업적·문화적 특성에 기반을 둔 것일 수 있다.³⁶⁾ 그리고 수도권으로 이주한 자식이 전라도 분가 부모에게 가장 많은 소득이전을 행하는 것은 호남권의 부모와 수도권으로 이주한 자식의 경제력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짐작된다.³⁷⁾

36) 문화적 요인에 의한 설명을 배제할 경우, 상대적으로 농지가 많은 전라도에서는 부모로부터 토지상속을 기대하고 소득이전을 실행하는 전략적 동기가 작용할 수 있다는 가설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전략적 행위의 분석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는다.

37) III장 1절의 분석에서 강원·충청·경상도 지역의 부모가 수도권 지역의 부모보다 자식으로부터 적은 소득이전을 받고 있는 것처럼 추정된 이유는, 자식의 거주지를 비롯한 자식측 변수가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표 8>은 자식의 특성이 통제되었을 때 충청권 부모가 수도권 부모에 비해 더 많은 소득이전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III장 2절의 <표 6>에서 수도권보다는 호남권에 거주하는 자식의 소득이전이 더 빈번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부모의 거주지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를 보면, 호남권에 거주하는 자식이 호남권에 부모를 두고 있을 확률(95%)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식이 호남권에 부모를 두고 있을 확률(7%)보다 훨씬 높다. <표 8>의 회귀분석 결과는 부모가 같은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식이 호남권에 거주하는 자식보다 더 많은 소득이전을 실행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V. 소득이전과 노인소득보장

앞 장에서는 사적이전의 결정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이 대체관계에 있음을 발견했다. 이 장에서는 노인가구주 세대의 자립적 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노인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이전이 수행해야 할 역할, 특히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제6차 KLIPS 데이터이다.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부가조사 응답자들 중에서 만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들만 선택해 월평균 소득과 사적·공적이전에 대한 자료를 얻고 이를 가구별 조사 및 개인별 조사의 데이터 항목과 매치시켜 1,157호의 노인가구주 세대 표본을 구성했다. 제6차 조사에 적용된 가구별 가중치를 이용하면, 이 표본이 약 299만2천 가구의 만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³⁸⁾

일단 이들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가 자식들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에 관한 기초통계부터 살펴보자. KLIPS 중고령자 부가조사에서 현재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만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 세대는 37.9%였다. 그리고 자식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노인가구를 포함할 경우 평균 사적이전 수급액은 월 15만8천원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노인가구만 대상으로 할 경우 평균 수급액은 월 37만원, 중위 수급액은 월 30만원이었다. 이처럼 가구 단위로 분석할 경우에도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전이 중요한 노후소득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앞으로는 얼마나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사적이전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공공부조는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다음에서는 사적이전을 통한 노인빈곤의 완화효과를 공공부조의 빈곤완화 효과와 비교하고, 노인빈곤 해소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추정한다. 또한 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보고, 이와 반대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 부적격수급이나 초과수급과 같은 누수구는 없는지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노부모 부양패턴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노인소득보장의 정책방향도 함께 제시할 것이다.

38) 통계청이 전국 2만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구소비실태조사’는 전체 가구에서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에 12.2%, 1990년에 14.1%, 그리고 2000년에 19.4%로서, 특히 1990년대 이후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1. 사적이전과 공공부조의 노인빈곤 완화효과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중 자립적 요소에 해당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 개인연금소득, 금융자산소득, 부동산소득, 그리고 공공부조를 제외한 공적이전소득 및 기타가구소득의 합계를 ‘근로자산소득(Y)’이라 정의하고, 이 소득이 최저생계비(M)에 미달하는 경우 ‘잠재적 빈곤’의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자.³⁹⁾ 주의할 점은 공적연금소득과 사회보험수급은 본인의 기여액과 근로경력에 영향을 받는 공적이전이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근로자산소득에 포함시켜, 공공부조(S)와 같이 절대빈곤 해소를 주된 목적으로 시행되는 공적이전과 구분했다는 것이다.⁴⁰⁾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서는 분석대상이 가구 단위이므로 노인 부부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에게 사적이전이나 공공부조를 제외한 근로자산소득이 있었을 경우 이를 기타가구소득에 포함시켜, 기타가구소득이 전체 가구원의 월평균 근로자산소득에서 노인 부부의 월평균 근로자산소득을 뺀 금액이 되도록 계산했다는 것이다.⁴¹⁾

노인가구의 빈곤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KLIPS 중고령자 부가조사가 실시된 2003년의 보건복지부 발표를 기준으로 1인 가구 355,774원, 2인 가구 589,219원, 3인 가구 810,431원, 4인 가구 1,019,411원, 5인 가구 1,159,070원, 6인 가구 1,307,904원, 그리고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148,834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해보자.⁴²⁾ <표 9>의 (1)열은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 세대 약 300만 가구를 대표하는 전체 표본의 특성을 요약하고 있다.⁴³⁾ 60세 이상의 평균적

39) 여기서 근로자산소득은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새로 정의된 개념으로서, 통계청이 정의하는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에서 공공부조 수급액을 제외한 소득에 해당한다.

40) 물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지만, 이 장에서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며, 대표적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공적연금을 비롯한 다른 모든 공적이전까지 포함한 가구소득과 최저생계비와의 비교를 통해 측정되므로 일단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을 자립적 근로자산소득 항목으로 분류했다.

41) 전체 가구원의 월평균 근로자산소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되었다. (1) 제6차 KLIPS 가구별 조사 자료에서 해당 노인가구주 세대에 있는 모든 가구원들의 연간 소득항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기타 정부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친척친지 보조금 등 이전소득을 제외한 근로자산소득(이 경우에도 사회보험급여는 포함)을 산출하고, (2) 이를 노인가구주(및 배우자)의 연간 근로자산소득 추정액(= 월평균 근로자산소득×12)과 비교해 전자가 후자보다 큰 경우 다른 가구원이 기여한 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자를 12로 나눈 금액을 해당 가구의 월평균 근로자산소득으로 추정했으며, (3) 전자가 후자보다 작거나 전자가 결측치를 갖는 경우에는 후자를 해당 가구의 월평균 근로자산소득으로 추정했다.

42)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6인 가구와 5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차이가 추가적인 가구원 수만큼 곱해져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인데, 이는 2004년에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 보건복지부의 방식을 따른 것이다.

43) <표 9>는 <표 4>와 같은 표본에서 추출된 통계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술했듯이

노인가구주 세대는 월평균 127만원의 근로자산소득을 얻고 있는데, 이 중 가구주 본인의 근로소득이 약 30만원인데 비해 60만원 남짓한 기타가구소득(예컨대 미혼성인자녀 등 다른 가구원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고, 이에 더해 16만원의 사적이전소득을 얻고 있어, 가구소득이 평균 가구원수 2.5명 기준 최저생계비 70만원을 상회함은 물론, 노후생활에 주관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소득의 평균인 113만5천원을 충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⁴⁴⁾ 그리고 평균적 노인가구의 순재산은 약 1억2천만원(대부분 부동산, 특히 거주주택이며, 금융자산과 부채는 거의 상쇄됨)으로 추정되었으며, 자동차 보유 가구는 30%, 여성가구주 세대는 29%,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는 30%, 배우자와 동거하는 세대는 6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열에서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근로자산소득을 가진 약 120만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는 다른 이전소득이 없을 경우 잠재적으로 절대빈곤의 위험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사적이전이나 공공부조가 없을 때 잠재적 빈곤율은 전체가구의 40.1%, 그리고 이들 잠재적 빈곤가구의 최저생계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의미하는 빈곤갭(poverty gap)은 연간 약 4조 6천3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3)열에서 보듯이 사적이전소득(P)을 근로자산소득에 합친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노인가구는 29.3%로 줄어들며, 이에 따라 빈곤갭도 연간 약 3조2천9백억원으로 감소한다. (2)열의 빈곤갭과 비교하면 연간 약 1조3천4백억원 가량의 노인가구 빈곤갭이 자식들에 의한 사적이전에 의해 좁혀진다는 것이다.

이제 사적이전이 아닌 공공부조에 의해 노인빈곤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기 위해 (4)열에서처럼 공공부조를 근로자산소득에 합친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노인가구를 조사하면, 빈곤율은 38.7%, 빈곤갭은 연간 약 4조5백억원으로 추정되어, (2)열에서 추정한 잠재적 빈곤 정도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⁴⁵⁾ (2)열에서 잠재적 빈곤가구에 제공되는 평균적인 사적이전의 양(월

<표 4>는 만 50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비가구주 포함) 각각에 대해 조사한 중고령자 부가조사의 원데이터(개인단위 자료)에서 뽑아낸 통계이지만(N=3,487명), <표 10>은 가구 단위의 빈곤을 조사하기 위해 중고령자 부가조사 응답자 중에서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현재 가구주인 노인가구주 세대의 표본(가구단위 자료)을 따로 구성해서 뽑아낸 통계이다(N=1,157가구). 따라서 평균 월 소득을 비교하면, <표 9>의 평균 가구소득이 <표 4>의 평균 개인(및 배우자)소득보다 높게 나온다. 이는 <표 9>의 노인가구주 세대의 경우 가구소득에 다른 가구원(예컨대 미혼자녀)의 소득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표 4>의 중고령자 중에는 자식이 현재 모시고 사는 노인(별도의 개인소득이 낮을 것으로 추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4) 물론 우리나라의 노인가구주 세대는 여성가구주 세대와 함께 가구빈곤율을 높이는 취약계층으로서 비노인가구주 세대에 비해 낮은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본 장에서는 절대빈곤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45) (3)열의 하단에 제시된 빈곤율과 빈곤갭은, 공공부조수급액(S)이 없다고 가정하고 사적이전소득(P)과 근로자산소득(Y)만을 더했을 때 그 합이 최저생계비(M)에 미달하는 가상적 노인가구의 비율과 빈곤의 심도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4)열의 하단에 제시된 빈곤율과 빈곤갭은, 사적이전소득(P)이 없다고 가정하고 공공부조수급액(S)과 근로소득(Y)만을 더했을 때 그 합이 최저생계비(M)에 미달하는 가

평균 14만6천원)을 보면, 이를 공공부조수급액에 공적연금소득과 사회보험수급액을 합친 공적이전의 양(월평균 7만1천원)과 비교하더라도, 빈곤율을 매우는 데는 공적이전보다 사적이전의 기여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공적이전보다 사적이전의 빈곤완화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지적한 선행 연구들(김교성(2002), 김진욱(2004), 박찬임(2005), 홍경준(2002) 등)과 부합하는 것이다.

사적이전과 공공부조를 모두 합한 총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노인가구주 세대를 보여주는 (5)열은 실제 노인빈곤의 규모와 심도를 보여준다. 이전소득을 모두 감안한 후에도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83만4천여 가구로 전체 노인가구의 27.9%에 달하며, 이들 가구를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연간 약 2조7천7백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⁴⁶⁾

<표 9>의 (5)열에서 빈곤가구로 분류된 노인가구주 세대는 평균적으로 근로자산소득 약 25만원에 사적이전 6만4천원과 공공부조 4만5천원을 모두 더해 가구소득이 약 3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준의 가구소득은 이들의 평균 가구원수 2.2명 기준 최저생계비 63만원에 미달함은 물론, 스스로 보고한 월평균 생활비 5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빈곤노인가구의 특성을 보면 (1)열의 전체노인가구 평균에 비해 순재산이 적고(평균 6천2백여만원, 중위값은 만원), 자동차 보유비율이 낮고(11%), 여성가구주 세대의 비율이 높으며(38.4%), 가구주의 연령이 약간 높고(만 70.5세) 상대적으로 저학력이며(고졸 이상 16.6%)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은 것(54.3%)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경상도가 많지만 인구비율을 감안하면 강원·충청·전라도 지역의 노인가구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별 경제력 차이가 노인가구 빈곤율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9>에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5)열에서 정의한 빈곤노인가구는 최저생계비 대비 총가구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해당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을 정의하고 빈곤율을 추정한 선행연구에서도 재산소득과 별도로 재산 자체를 고려한 경우는 흔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빈곤의 정도를 평가할 때 현재 소득원의

상적 노인가구의 비율과 빈곤의 심도를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물론 이들 가구가 실제로는 사적이전과 공공부조를 모두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표에서 보듯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들의 평균 사적이전소득과 평균 공공부조수급액은 모두 양의 값을 갖고, (5)열에 제시된 실제 빈곤의 규모와 심도는 이보다 덜 심각한 값을 갖는다. 또한 <표 9>의 (2)열부터 (4)열까지에 제시된 노인가구의 특성은 가상적 상황(각각, 가구소득에 이전소득을 전혀 더하지 않을 경우, 사적 이전만 더할 경우, 공적 이전만 더할 경우에 해당)을 상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표본가구의 평균적 특성을 요약해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5)열에 제시된 실제 빈곤가구의 특성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46) 우리나라에서 노인가구주 세대는 비노인가구주 세대보다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제1~2차 KLIPS 데이터를 사용한 구인회(2001)는 1998년에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 세대의 빈곤율은 40.5%로서, 20~59세 연령대의 비노인가구주 세대의 빈곤율 15.6%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추정한 노인가구 빈곤율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양자는 조사시점(외환위기 직후와 그로부터 5년 후), 기타가구소득의 반영방식, 소득의 측정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실을 하지는 않더라도 잠재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⁴⁷⁾ 둘째, 빈곤노인가구에게 주어지는 공공부조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현물로 주어지는 의료급여나 장제급여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월 소득원 항목으로 보고된 것보다 실제 공공부조 수급액은 더 클 수 있으며 절대빈곤의 실태도 추정치보다 덜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게 되는 소득과 생활비의 겹은 보고 되지 않은 가구 소득이나 현물보조 등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가구 빛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47) 같은 맥락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 심사에서도 소득 이외에 보유 재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소득을 시중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환산율을 적용해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장의 3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표 9> 사적이전과 공공부조의 노인가구 빈곤완화효과

	(1) 전체 노인가구	(2) 잠재적 빈곤가구	(3) 사적이전후 빈곤가구	(4) 공공부조후 빈곤가구	(5) 총이전후 실제빈곤가구
해당노인가구의 정의	전체	Y<M	Y+P<M	Y+S<M	Y+P+S<M
추정 최저생계비(M)	69.1	59.8	62.6	60.3	63.1
근로자산소득(Y)	126.7	27.6	24.6	27.3	24.5
본인 근로소득	30.5	4.8	5.7	4.7	5.5
배우자 근로소득	7.9	2.2	2.6	2.1	2.5
개인연금소득	0.5	0.1	0.1	0.1	0.1
금융자산소득	3.5	1.2	1.4	1.2	1.4
부동산소득	10.1	1.5	1.4	1.5	1.5
공적연금소득	11.4	1.8	1.8	1.8	1.9
사회보험수급	1.4	0.9	1.1	0.8	1.1
기타가구소득	61.5	15.2	10.5	15.0	10.5
사적이전소득(P)	16.1	14.6	6.6	14.5	6.4
자 식	15.8	14.3	6.2	14.1	6.2
자식 이외	0.2	0.4	0.4	0.4	0.2
공공부조수급(S)	2.2	4.4	5.5	3.9	4.5
월평균 생활비	92.9	50.2	50.4	50.4	51.3
주관적 최저소득	85.5	61.4	60.4	61.6	60.7
주관적 적정소득	113.5	82.7	81.2	83.0	81.9
가구원수	2.5	2.1	2.2	2.1	2.2
자식수	3.6	3.8	3.6	3.8	3.7
순재산(=R+ F-D)	11756	5967	6089	6059	6268
부동산(R)	11806	6038	6055	6139	6251
금융자산(F)	1570	872	986	895	1011
부채(D)	1620	943	952	974	993
자동차 소유 가구	30.3%	8.7%	10.5%	9.0%	11.0%
가구주 특성					
연 령	68.2	70.7	70.4	70.7	70.5
여성 가구주	28.9%	41.4%	38.7%	41.0%	38.4%
고졸 이상	29.9%	17.5%	16.5%	18.1%	16.6%
배우자와 동거	64.1%	51.5%	53.7%	52.0%	54.3%
거주지역					
수도권	42.9%	36.4%	37.5%	37.1%	38.7%
강 원	3.8%	4.9%	6.1%	5.1%	6.4%
경 상	31.6%	33.5%	30.6%	33.2%	29.8%
전 라	13.4%	14.7%	14.6%	14.1%	13.7%
충 청	8.3%	10.4%	11.3%	10.5%	11.4%
해당노인가구수	2,991,828	1,199,002	876,365	1,156,827	834,421
전체노인가구중 비율	100.0%	40.1%	29.3%	38.7%	27.9%
연간 빈곤갭 추정액	해당 없음	4조6282억	3조2912억	4조455억	2조7688억

주: 단위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금액은 만원 단위임.

자료: 제6차 KLIPS 데이터에서 필자가 계산.

2. 노인가구에 대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와 누수구

공공부조가 노인빈곤층에 대한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앞의 <표 9>의 (5)열에서와 같이 모든 이전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노인가구가 광범위하게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절대빈곤상태에 놓여있으면서도 공공부조의 수급에서 제외된 노인가구가 있다면, 공공부조를 통한 빈곤해소정책의 사각지대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0>의 (1)열에서는 근로자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합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를 받지 않은 노인빈곤가구가 약 48만호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표 9>의 (5)열에서 추정한 노인빈곤층이 약 83만 가구였음을 상기할 때 노인빈곤가구의 약 58%는 공공부조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⁴⁸⁾ 물론 공적연금이나 사회보험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을 가진 가구가 일부 있지만 절대빈곤을 벗어나게 할 정도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공공부조를 필요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와 반대로 공공부조가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계층에게 제공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노인가구주 세대가 공공부조를 수급한 경우는 <표 10>의 (2)열에서 보듯이 약 52만 가구로서 전체 노인가구 중 17.3%, 그리고 약 91만호의 공공부조수급 노인가구 중에서는 56.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론 이들 가구의 평균 공공부조 수급액이 월 3만6천원에 지나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더 적은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도 공공부조수급에서 배제되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가 존재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간 약 2천3백억원의 공공부조액은 반드시 긴요한 지출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이들 가구의 특징은, 노인가구주 본인이나 배우자의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등 노출되기 쉬운 소득의 합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지만, 기타 가구원이 벌어오는 소득(평균 60만원)이나 자식으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소득(평균 23만원) 등의 보충적 소득이 이들을 빈곤선 위로 밀어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가구주의 특성을 보면 빈곤노인가구의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고졸 이상 27.5%)과 높은 배우자 동거비율(61.9%), 낮은 여성가구주 비율(30.9%)을 나타내고, 평균 1억원 가량의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가구가 일반적인 빈곤가구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조가 부적격 노인가구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액이 최저생계비 부족액을 채워주는 수준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잠재적 초과수급의 경우를 <표 11>의 (3)열에서 살펴보자.

48) 이 추정치는 KLIPS 노인가구주 세대의 소표본에서 얻어낸 것이므로, 2005년에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로 대표성을 갖는 3만 가구를 표본 추출해 조사한 빈곤 통계와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05년 8월 11일 언론보도를 통해 잠정 발표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138만명,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는 372만명, 그리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를 넘고 120%에 못미치는 차상위계층이 206만명으로서, 이들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전체인구에 15%에 해당하는 7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11>에서 정의한 공공부조가 반드시 기초생활보장급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 세대만을 표본으로 한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본 연구에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노인가구의 비율 58%가 과대추정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 4만2천 가구는 평균 월 24만3천원의 공공부조를 지급받는데, 이 중 평균 월 10만3천원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보면 초과수급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노인가구가 받고 있는 사적이전소득도 이와 비슷한 평균 월 10만9천원으로서 이런 사적이전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초과수급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가구에 지급되는 공공부조가 가구소득의 최저생계비 미달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사회단체로부터의 생활보조금이나 기부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⁴⁹⁾

49) 이 범주에 해당하는 표본가구는 전체 1157가구 중 16가구로서 다른 범주와 달리 매우 소수이므로 가구별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한 추정치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10> 노인가구 공공부조수급의 사각지대와 누수구

	(1) 사각지대	(2) 불긴요수급	(3) 초과수급
	Y+P<M, S=0	Y+P>M, S>0	Y+P<M, Y+P+S>M
해당노인가구의 정의			
추정 최저생계비(M)	63.8	63.0	51.4
근로자산소득(Y)	28.6	113.3	26.5
본인 근로소득	6.3	20.4	9.9
배우자 근로소득	3.2	4.6	3.4
개인연금소득	0.0	0.2	0.0
금융자산소득	1.9	4.5	1.3
부동산소득	1.3	9.5	0.0
공적연금소득	2.1	11.8	0.4
사회보험수급	1.4	2.2	0.5
기타가구소득	12.4	60.2	11.0
사적이전소득(P)	7.0	23.5	10.9
자 식	6.8	23.3	6.4
자식 이외	0.2	0.2	4.5
공공부조수급(S)	0.0	3.6	24.3
월평균 생활비	57.6	81.2	33.8
주관적 최저소득	61.7	79.1	55.1
주관적 적정소득	84.9	103.7	68.2
가구원수	2.3	2.2	1.7
자식수	3.8	4.3	2.9
순재산(=R+F-D)	7638	9971	2522
부동산(R)	7765	9218	2160
금융자산(F)	1274	1572	483
부채(D)	1401	819	121
자동차 소유 가구	16.0%	26.4%	0.0%
가구주 연령	69.6	71.6	69.3
여성 가구주	36.2%	30.9%	45.0%
가구주 학력 고졸 이상	17.4%	27.5%	13.5%
배우자와 동거	55.6%	61.9%	41.5%
수도권	47.7%	23.6%	12.6%
강 원	8.8%	0.9%	0.0%
경 상	22.1%	45.1%	47.0%
전 라	7.8%	23.4%	32.0%
충 청	13.6%	7.0%	8.4%
해당노인가구수	484,308	518,164	41,944
전체노인가구중 비율	16.2%	17.3%	1.4%
수급노인가구중 비율	해당 없음	56.9%	4.6%
연간 해당항목 추정액	사각지대 빈곤갭 1조6394억	불긴요수급액 2266억	초과수급액 519억

주: 단위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금액은 만원 단위임.

자료: 제6차 KLIPS 데이터에서 필자가 계산.

그런데 <표 10>의 (2)열과 (3)열에서 살펴본 공공부조수급에 있어 일종의 ‘누수액’ 규모를 <표 11>의 (1)열에서 추정된 사각지대 빈곤갭이나 <표 9>의 (5)열에서 추정된 전체 빈곤갭과 비교하면, 누수를 막는 것만으로는 사각지대 빈곤갭의 해소, 나아가 전체 빈곤갭의 해소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앞서 분석했듯이, 만약 공공부조수급이 사적이전을 구축한다면 빈곤갭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공공부조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예컨대 공공부조의 확대가 기존의 사적이전을 완전히 구축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절대빈곤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공공부조의 연간 예산이 <표 9>의 (5)열에서 추정된 약 2조7천7백억원에서 약 4조5백억원으로 46%나 증가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일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등 전담인력의 확충이 요구될 것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도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제 명시적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초점을 맞춰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와 누수구를 점검해보자.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보)는 1960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빈곤가구에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⁵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런데 <표 10>의 (1)열에 해당하는 빈곤노인가구가 왜 기초생보 대상가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내몰렸는지, 구체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는지,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주된 이유였는지를 파악하려면 보다 상세한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⁵¹⁾ 하지만, KLIPS 중고령자 부가조사가 실시된 2003년을 기준으로 기초생보의 수급자격기준과 KLIPS 데이터에서 관찰가능한 가구의 특성을 대조해보면, 제도적 기준으로 인한 미수급과 이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분간해볼 수 있을 것이다.⁵²⁾

먼저 2003년 기초생보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기준을 보면, “(주택, 토지, 특정기준의 자동차⁵³⁾ 등 일반재산 - 지역별 기초공제액⁵⁴⁾ - 부채) × 4.17% + (금융재산 - 생활

50) 앞서 각주에서 언급했듯이,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사적이전소득 등) 및 추정소득으로 구성되는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경로연금 등)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칭한다.

51) 윤진호 외(2004)는 2002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저소득 자활사업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을 가진 226만 빈곤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는 약 60만 가구로서 빈곤가구의 26%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동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 중 43%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에 의한 탈락이고, 57%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탈락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2) 매년 실시되는 KLIPS 가구 조사에는 지난 조사 이후 기초생보 대상가구였거나 현재 기초생보 대상가구인지를 묻는 질문이 있지만 해당 질문에 대한 무응답으로 인한 결측치가 많기 때문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기초생보 수급대상으로 추정했다. (1) 해당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2) 작년 한 해의 모든 가구소득을 묻는 별도의 질문에서 이전소득항목 중 기초생보 지원금이 보고된 경우.

준비금 및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⁵⁵⁾) × 6.26% + 승용자동차 가액 × 100%”와 같이 설계되어 있다. 이처럼 재산의 종류별로 월 소득환산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특히 승용차의 경우 월 100%의 무거운 환산율을 적용하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통상의 이자율에 비해 매우 높은 환산율을 설정하여 기초생보 수급자로 선정보호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KLIPS 데이터에서 보고 되었거나 추산될 수 있는 재산관련 항목은 순재산 계산에 사용된 부동산, 금융재산, 그리고 가구부채이다. 기초생보 수급자격 심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동차는, KLIPS 가구공통조사에 나타난 월평균 생활비 항목에 차량유지비가 보고 되었는지에 따라 소유 여부를 추정했다. 그러나 보유차량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특정기준의 차량인지의 여부나 차량 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일단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관련 항목에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거주지역별 기초공제액, 그리고 생활준비금 공제액을 반영해, KLIPS 노인가구주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했다. 공제액과 부채를 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소득환산규정에 따라 영의 값으로 처리했다. 소득평가액에 사적이전소득 및 기초생보급여 이외의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Z라 표시하면, <표 11>에서처럼 Z는 근로자산소득(Y)과 사적이전소득(P)과 기초생보를 제외한 공공부조(S)의 합에 재산의 소득환산액(W)을 더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표 11>의 (1)열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가구주 세대 중 기초생보 수급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가구가 약 38만 호로서 전체 노인가구주 세대의 12.7%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⁵⁶⁾ 이 범주에 해당하는 노인가구가 보유한 평균 재산은 고작 590만원으로서 재산의

-
- 53) 재산 조사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보다 소득환산율이 낮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된다. (1)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①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② 1500cc 미만의 다음 차량: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차량 11년 이상인 차량(매년 1년씩 상향조정 예정), (2) 승합자동차 중 생업용 차량 및 장애인 사용 2000cc 미만 차량, (3) 이륜자동차 중에서 50cc 이상 260cc 미만 차량, (4)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포함)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단,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5)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6)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54) 2003년 기준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재산액)은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반영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3,3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3,000만원, 그리고 농어촌(도의 ‘군’) 2,9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기초공제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는데, 이 두 종류의 재산에서 공제한 후에 기초공제액이 남는 경우에도 승용차 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는 않는다.
 - 55) 생활준비금은 일률적으로 가구당 300만원이 공제되며,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은 가구당 1통장에 한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 56) 여기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공공부조 수급액에는 기초생보급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인정액은 $Z=Y+P+S+W$ 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승용차 가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월 소득환산액은 대부분 영의 값(부채와 기초공제액을 빼면 실제로는 상당수가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처리되어 평균 월 1만6천원에 지나지 않는다. 자식으로부터의 사적이전 역시 평균 월 7만5천원으로 조사되어 최저생계비를 확보하는 데 35만원이나 부족한 근로자산소득을 보충하기에는 태부족이다. 이들 중 차량유지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는 10.6%로 조사되었는데, 이 모든 가구가 차량 가액만큼 매월 추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실제로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생업용 차량 또는 장애인용 차량일 수 있다), 보유차량이 없는 나머지 가구가 기초생보 대상에서 배제된 이유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표 11>의 (2)열에서는 차량의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차도 소유하지 않은 가구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인정액을 갖고서도 기초생보에서 제외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여기 해당하는 가구들은 전체 노인가구의 11.3%에 해당하는 약 34만 가구로 추산되며, 이들 가구의 빈곤갭을 해소하기 위한 연간 재원은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열에 나타난 기초생보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의 특징은 평균적인 노인가구에 비해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약 20% 포인트나 높은 49%이고, 고졸 이상 가구주의 비율은 약 23% 포인트나 낮은 7% 수준이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은 약 20% 포인트나 낮은 44%라는 것이다. 지역별 인구대비로 보면 수도권보다 경상·전라·충청도 등 지방에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 노인가구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와 누수구

	(1) 기초생보 사각지대	(2) 차 소유가구 제외 시 사각지대	(3) 기초생보 불건요수급	(4) 기타가구소득 제외 시 불건요수급
해당노인가구의 정의	Z<M, 미보장가구	Z<M, 차 없음, 미보장가구	Z>M, 보장가구	Z-X>M, 보장가구
추정 최저생계비(M)	61.3	57.7	50.3	49.8
근로자산소득(Y)	24.9	21.9	61.2	66.1
본인 근로소득	6.1	6.0	23.7	29.0
배우자 근로소득	3.3	3.3	4.2	5.1
개인연금소득	0.0	0.0	0.3	0.3
금융자산소득	0.7	0.8	0.0	0.0
부동산소득	0.4	0.5	2.2	2.6
공적연금소득	1.5	1.4	1.2	0.0
사회보험수급	1.4	1.4	1.9	2.3
기타가구소득(X)	11.5	8.4	27.9	26.6
사적이전소득(P)	7.7	8.3	24.0	26.0
자 식	7.5	8.1	24.0	26.0
자식 이외	0.2	0.2	0.0	0.0
공공부조수급(S)	1.0	1.0	9.4	7.7
월평균 생활비	41.9	36.2	67.5	72.5
주관적 최저소득	53.3	50.2	78.8	86.9
주관적 적정소득	72.8	68.8	94.3	102.2
가구원수	2.2	2.0	1.6	1.6
자식수	4.1	4.1	4.2	4.0
순재산(=R+F-D)	591	744	8011	9638
부동산(R)	1461	1373	7633	9235
금융자산(F)	112	117	586	651
부채(D)	982	745	209	248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W)	1.6	1.8	338.8	415.9
소득인정액(Z)	35.1	33.0	174.2	204.7
자동차 소유 가구	10.6%	0.0%	9.9%	12.2%
가구주 연령	70.3	70.8	73.5	73.0
여성 가구주	46.7%	49.0%	47.5%	35.6%
가구주 학력 고졸이상	7.9%	6.7%	21.4%	26.3%
배우자와 동거	46.6%	44.0%	33.3%	40.9%
수도권	28.8%	27.8%	56.8%	69.7%
강 원	5.6%	3.7%	0.0%	0.0%
경 상	35.8%	36.5%	14.5%	17.8%
전 라	16.6%	17.6%	23.8%	6.4%
충 청	13.3%	14.4%	4.9%	6.1%
해당노인가구수	381,236	337,181	41,265	33,613
전체노인가구중 비율	12.7%	11.3%	1.4%	1.1%
보장노인가구중 비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1.0%	17.1%
연간 해당항목 추정액	사각지대 빈곤갭 1조1986억	사각지대 빈곤갭 9980억	불건요수급액 418억	불건요수급액 269억

이처럼 빈곤에 쉽게 빠지게 만드는 일반적인 결정요인, 즉 여성가구주, 저학력, 독신 및 독거, 지방 거주 등의 특성이 기초생보 수급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빠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기초생보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있어서도 이런 특성들을 가진 가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 가구는 적어도 데이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월 평균소득을 보거나 보유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추정해보았을 때는 기초생보 수급권에서 배제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만약 이들이 소득 및 재산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자식이 있는 경우 수급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이라면, 월평균 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자식으로부터의 생계비 보조가 기초생보급여를 대체할 수준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 가구가 기초생보 대상가구로 지정된 경우를 살펴보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2003년 수급자 선정기준은 2002년 12월 31일 현재 수급 대상으로 선정·보장중인 가구에 대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소득인정액에 합산했다는 점이다.⁵⁷⁾ 이를 감안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표 11>의 (3)열에서처럼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약 4만 가구에 지급된 연간 약 420억의 기초생보 지원금은 그 수급의 긴요성에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평균 순재산이 8천여만원으로 조사된 이들 가구가 <표 11>의 (1)열과 (2)열의 가구들보다 우선적으로 기초생보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이들 가구는 자식으로부터 사적이전을 월평균 24만원이나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 공공부조의 도움이 없이도 절대빈곤상태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소득원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타가구소득이 사적이전소득과 중복계산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표 11>의 (4)열에서는 기타가구소득(X로 표시)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최저생계비와 비교해보았다. 이렇게 완화된 소득 기준으로도 수급자격이 확보되지 않는 가구는 약 3만4천 호에 달하며, 이들 가구가 기초생보 노인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7%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3)열과 (4)열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소표본에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기초생보 운영에 있어 잠재적 누수구의 실제 규모보다는 그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약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57) 또한 이 범주에 해당하는 가구의 공공부조 수급액에는 기초생보급여가 포함되므로 기초생보급여를 제외한 공공부조 수급액을 분리해낼 수 없다. 따라서 <표 12>의 (1)열과 (2)열의 기초생보 미지정 빈곤 가구의 월 평균 공공부조 수급액 1만원을 원용해 기초생보 지정가구가 받는 기초생보급여가 아닌 공공부조 수급액으로 추정해보았다. 여기에 2003년 기초생보 계속수급자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3)을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은 $Z=Y+P+1+W/3$ (단위: 만원)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2003년 KLIPS 노인가구주 세대 표본에서 3가구는 2003년에 새로 기초생보 수급대상으로 지정되어 1/3의 소득환산액의 적용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들의 존재가 부적격수급가구의 수나 비율의 추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3. 노부모 부양패턴의 변화와 노인소득보장의 방향

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은 동거를 통한 노부모 부양과 더불어 우리나라 노인들이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가운데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사적 안전망의 구실을 해왔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는 노부모 부양패턴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표 12> 노부모 부양패턴의 변화

부양주체	돌아가신 노부모가 살아 계셨을 때 누가 주로 그분들을 부양하셨습니다? (n=2,597)	노부모가 살아 계시다면 현재 누가 주로 그분들을 부양하고 계십니까? (n=799)	증감 (% 포인트)
노부모 자신	18.6%	34.5%	15.9
장남·며느리	70.6%	45.2%	-25.4
그 외의 아들·며느리	6.5%	13.8%	7.2
딸·사위	2.8%	4.1%	1.4
자녀 모두 공동으로	1.5%	2.5%	1.0

자료: 제6차 KLIPS 중고령자 부가조사(2003년) 데이터.

<표 12>에서 보듯이, 만 50세 이상의 KLIPS 중고령자 응답자는 “돌아가신 노부모가 살아 계셨을 때 누가 주로 그분들을 부양하셨습니다?”라는 2003년 조사의 설문에 대해 71%가 장남이라고 대답했고 노부모 자신이라고 한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그런데 “노부모가 살아 계시다면 현재 누가 주로 그분들을 부양하고 계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장남의 비율이 45%로 줄고 노부모 자신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비율은 35%로 늘어났다. 생존한 노부모가 있는 응답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임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장자상속 및 장자의 노부모 부양규범이 해체되는 현상과 함께 노부모 부양의 책임이 다른 자식들보다는 노부모 자신에게로 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⁸⁾

또한 자식으로부터의 사적이전 역시 노인의 주 소득원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공적이전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임을 <표 13>가 보여준다.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해 일본 총무청에서 실시한 국제비교조사에 따르면, 자식으로부터의 사적이전이 주 소득원이라고 대답한 60세 이상

58)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06년 7월 1일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459만7천명으로 총인구 4849만7천명 중 9.5%를 차지해 2000년에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7%)에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14%), 그리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20%)에 진입할 전망이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중 18%는 아무 가족 없이 독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노부모 부양규범 해체와 핵가족화에 따라 상당수의 노인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한국 노인이 1980년에는 72.4%에 달했지만 1995년 조사에서는 56.3%로 약 16%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공적연금이나 공공부조 등의 공적이전이 주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한국 노인은 1980년 2.0%에서 1995년 6.6%로 소폭 증가했다. 이를 2003년 KLIPS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와 비교해보면 최근의 추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60세 이상의 KLIPS 고령응답자 중 가장 큰 소득원이 자식으로부터의 사적이전인 것으로 보고한 비율은 31.1%로서 1995년에 비해 약 25% 포인트 줄었으나, 공적이전이 주 소득원이라고 보고한 비율은 25.6%로 19% 포인트 늘었다.⁵⁹⁾ 따라서 노후 생활비 조달을 주로 자식에 의존하는 고령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반면, 사회보장에 생계를 의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후 본격화된 복지지출의 증대와 함께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당국이 매년 발표하는 『예산개요』에 의하면, 명시적으로 노인복지 항목으로 책정된 사회복지예산만 보더라도 2003년 원화를 기준으로 1995년 약 784억원이던 예산이 2003년에는 3902억원으로 약 5배 가까이 증가했다.⁶⁰⁾ 또한 <표 13>에서는 본인의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고령인구도 1995년에 비해 약 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식으로부터의 사적이전액 감소에 따른 소득결손이 주로 공적이전의 확대와 노인근로의 증대에 의해 채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¹⁾

59) 1980년 및 1995년 조사와 비교하기 위해 2003년 통계에서 주 소득원은 <표 14>와 같이 구분된 소득 구성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정의했다. 두 항목으로부터의 소득이 같은 금액으로서 최대 소득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2003년의 백분율 합계는 결과적으로 100%를 조금 넘는 101%가 되었다.

60) 여기서 정의한 노인복지예산에는 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2000년 10월 이전에는 생활보호)급여 지급 예산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할 경우 그 액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예산으로 포함된 구체적 항목은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1995년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노령수당 추가지원(월 2만원), 80세 이상의 거택시설 보호대상자에 대한 추가지원(월 3만원), 경로당 운영비 등이다. 2003년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대상자(34만명)에 대한 경로연금 추가지원(월 4만5천~5만원),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31만명)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월 3만5천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 재가치매노인의 치료·요양을 위한 공공치매병원 신축비 등이다. 『1995년도 예산개요』(재정경제원) 192~193쪽과 『2003년도 예산개요』(기획예산처) 147~148쪽 참조.

61)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할 경우, 2003년에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40.9%로 높아진다.

<표 13>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주 소득원 변화 추세

항 목	구 분	1980년	1995년	2003년
근로소득		16.2%	26.6%	30.4%
자산소득	(재산소득·예금인출·사적연금)	5.5%	9.9%	9.9%
사적이전	소 계	75.6%	56.6%	31.4%
	자 식	72.4%	56.3%	31.1%
	자식 이외	3.2%	0.3%	0.3%
공적이전	소 계	2.0%	6.6%	25.6%
	공적연금·사회보험	0.8%	2.9%	10.6%
	공공부조	1.2%	3.7%	15.0%

자료: 1980년과 1995년의 주 소득원 자료는 日本 總務廳長官官房高齡社會對策室 (1997), 「高齡者の生活と意識」, 第4回 國際比較調査結果 報告書, 中央法規 (석재은·김태완 (2000), 35쪽에서 재인용 및 재구성). 2003년의 주 소득원 자료는 제6차 KLIPS 중고령자 부가조사 데이터에서 필자가 계산.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부양 역할의 비중이 가족으로부터 국가로 꾸준히 옮겨가고 있고, 가족 내에서는 자식으로부터 노부모 자신에게로 부양책임이 넘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사회의 전반적 복지수준 상승과 고령화, 그리고 개인주의화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극심한 저출산 추세가 가져올 노후 부양가족의 격감 내지 부재에 따라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⁶²⁾

이러한 추세와 전망 하에서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부양에 있어서 가족과 국가의 상대적 역할 비중이 변화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변화의 방향은 가족, 특히 부양의무자로서 자식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다. 국가의 노인소득보장 역할이 그 갭을 메우고, 나아가 전반적인 노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출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 이에 반응해 가족의 역할, 예컨대 자식의 노부모 부양이나 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은 더욱 빨리 줄어들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보호기능의 사회적 대체를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62) 2005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에 관한 국민여론조사’(조선일보사·미래에셋증권 공동) 결과도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부모가 은퇴하면 자녀들이 부모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47.4%가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정작 “내가 은퇴하면 자녀들이 내 생활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26.9%의 응답자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이 조사는 2004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미국·일본·중국·영국·프랑스·브라질·멕시코·홍콩·캐나다·인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과 동일한 항목을 물었던 것인데, 한국인의 경우에만 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해 “지금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나중에 받지 못할 것이다”는 식의 비대칭적인 의식을 드러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인구 고령화와 노부모 부양패턴의 변화가 이례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후대비 민간저축에 대한 악영향,⁶³⁾ 이타적 사적이전의 구축, 가족 위협의 사회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것이다.⁶⁴⁾ 이런 입장에서 제기된 한 가지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른바 ‘효행 장려 및 지원 법안’ 또는 ‘효도 법안’과 같이 노부모 부양을 법을 통해 장려하는 제안이다.⁶⁵⁾ 예를 들어 ‘효도직불카드제’를 도입해 노부모에게 사적이전을 공식적으로 제공한 자식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 등 공적이전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이런 방안 역시 노부모와 자식의 협력 하에 만들어낼 수 있는 누수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며,⁶⁶⁾ 자식의 이기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동일금액 이상의 공적이전이 자신에게 되돌아오지 않는 한 이런 법안에 의해 소득이전을 실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 또한 이런 정책방향은 사회의 추세적 전개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점차 현실성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⁶⁷⁾

이처럼 앞으로 자식이 노후대비책이 되기 힘들다면, 향후 고령인구의 소득보장, 특히 빈곤노인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등 각각의 소득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을 모두 갖춘 고령인구를 위한 일자리 마련을 통해 자립적 근로소득이 중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생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⁶⁸⁾ 전술했듯이 지금도 생계형 근로에

63) 특히 자산심사(means test) 방식의 복지 프로그램은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을 넘어서 소비지출을 함으로써 재산을 줄이거나 빚을 늘이는 것과 같은 부의 저축(dissaving)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64) 앞서 각주에서 언급한 ‘은퇴에 관한 국민여론조사’의 국제비교를 보면, “지난 1년간 은퇴 이후를 위해 준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44.1%로 11개국 중 9번째(1위 캐나다는 96.5%)로 처진 반면, “은퇴 후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45.9%로 11개국 중 첫 번째를 차지해, 노후에 대한 사적 대비(저축이나 의존할 자식)는 부실하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과도하고 매우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5) 다소 극단적인 예로 싱가포르에서는 1995년 부모부양법(Maintenance of Parents Act)을 제정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식이 부모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부모가 법적으로 자식에게 부양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친자나 양자, 아들이나 딸의 구별 없이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며, 자식이 많을 때는 부양책임을 분담한다. 부양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부모, 자식, 그리고 위원회가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되, 한번 결정된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어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도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식이 빈곤한 노부모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우선 해당 노부모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자식에게 보장비용 징수 가능성에 대해 서면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6) 예를 들면 부모와의 합의 하에 부모에 대한 공개적 소득이전 후 비공개적 환수를 통해 인센티브만 취하는 편법이 가능하다.

67) 이와 관련된 것으로, Ogawa and Retherford(1997)은 일본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 자식과 노부모의 동거비율 하락과 가족연대 약화, 여성의 교육 및 경제활동 증대, 부양가능혈족의 감소, 가부장제 약화 등으로 정부가 노인소득보장의 부담을 국가에서 가족으로 일부 되돌리려는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중사하는 고령인구가 상당히 존재하지만, 앞으로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은 세대가 고령인구에 편입되는 점을 고려해, 이제는 고령근로의 질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은퇴 전에 담당했던 업무와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부문이나 각자가 특기와 취미를 가진 부문에서 고령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인 동시에, 노인소외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고령인구의 사회적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재정고갈의 우려 속에 시급한 개혁 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적인 노후대비저축이 장려될 필요가 있다. 앞의 <표 4>와 <표 13>에서 보듯이 고령인구의 소득원으로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산소득의 비중은 우리나라에서 노후대비 장기저축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후소득으로서 자산소득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장기저축상품을 도입하고, 개인연금의 혜택과 융통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비를 단행하며, 사적인 노후대비저축이 고령인구의 견실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과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⁶⁹⁾

셋째,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표 설정과 더불어 노인소득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전달체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사회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방식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빈곤노인가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절대빈곤 해소가 되어야한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원 마련이 요구되지만, 현행 공공부조제도 하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복지예산의 팽창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취약계층에 집중(targeting)하고, 경제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면서 향후 폐지하거나 삭감하기 힘든 보편급여(universal benefit)의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인구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편급여의 확대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가는 사회적 환경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 모색될 가능성도 있지만, 빈곤율의 감소에 영향을 받게 될 빈곤해소비용과는 달리 경직성 복지지출로서 자리 잡아 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노인소득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고 있는 사적이전을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수립 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다. 사적이전을 당사자가 성실신고하지 않는 한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은 기초생보와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 두 가지 상반된 문제를 가져온다. (1) 사적이전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의적인 간주부양비가 산정되어 공공부

68)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근로를 막는 정년제를 재검토하고(‘임금피크제’와 병행검토), 연금의 급여시기를 상향조정하며, 고령인구에 맞게 설계된 고령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for the Elderly)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69)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금융정책과제와 실행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로서는 박창균(2005)을 참조하라.

조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문제와, (2) 충분한 사적이전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불균요한 공공부조가 제공되어 누수구를 만드는 문제가 그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두 번째 문제보다는 정책적 개선의 가능성 면에서나 정책의 우선순위 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소득인정액 조사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사적이전까지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누수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누수구의 존재는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전달체계상의 한계이지만,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은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달성의 실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누수구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면서 사각지대를 광범위하게 조장하는 제도설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선 사회복지사 등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공공부조수급 적격자가 정보 부족이나 신청방법에 대한 무지 등의 이유로 수급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초생보 운영에서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식으로부터의 사적이전을 간주부양비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추정하고 평균적인 사적이전의 실태에 비해 과대추정된 부양비를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가구의 경제적 형편이 잠재적 기초생보 수급권자로 검토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들 가구에 제공될 수 있는 자식으로부터의 사적이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속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파악하기 힘든 사적이전을 색출하기 위해 행정력을 사용하거나 간주부양비를 책정하는 것은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 제공되는 사적이전에 정책적 개입을 자제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자식을 낳아 기른 수고를 노후에 소액의 이전소득으로 일부나마 보상받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설령 자식으로부터 받는 소득이전의 존재를 감안하지 않고 빈곤노인가구에게 최저생계비를 채워주는 공적이전을 제공한 것이 기존의 사적이전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빈곤해소라는 최우선 정책목표는 여전히 달성되고 있는 것이다.⁷⁰⁾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KLIPS 데이터를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노후소득의 중요한 원천이 되어온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전의 실태와 그 결정요인을 고찰했고,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빈곤 완화효과를 공공부조와 비교하여 분석했으며,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와 누수구를 지적했다. 앞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항목별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04년 기준으로 다섯 가구 중 세 가구는 부모에게 제공한 사적이전이 있었으며, 소득이전을

70) 이 경우 정부가 빈곤노인가구의 부양의무자에게 일종의 보조금을 준 효과를 갖는데, 경제적 지위나 소득의 세대간 상관성(intergenerational correlation)을 감안하면 자식 세대에서 저소득 가구의 가치분소득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빈곤노인에게 여러 자식들이 있고 이 중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식으로부터 사적이전이 제공되어왔을 경우, 공적이전에 의한 사적이전 구축은 자식들 중 상대적으로 소득자의 후생을 주로 높일 가능성도 있다.

실행한 경우 연간이전총액의 평균값은 약 200만원, 중위값은 120만원이었다.

- (2) 2003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은퇴와 고령화에 따른 근로소득 격감을 보충하기에는 자산소득이 미미하고 사적이전소득 역시 충분하지 않아 배우자 소득을 포함한 평균 월 소득이 75세 이후에는 45만원으로 떨어지는 등 고령층의 빈곤위험이 상당히 높다.
- (4) 노부모에 대한 자식의 소득이전은 노부모의 생계를 보전해주려는 이타적인 동기가 지배적인 동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환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교환이 아니라 주로 노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보인다.
- (5) 사적이전액은 노부모의 소득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자식의 소득(특히 근로소득)과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나, 이전액의 소득탄력성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
- (6) 사적이전액은 노부모가 75세 전후일 때 최대가 되고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 (7) 공적이전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부조수급은 사적이전을 거의 일대일로 구축하는 효과를 갖는다.
- (8) 부부간에 각자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을 둘러싼 전략적 상황이 존재한다. 예컨대 결혼 상태에서 한쪽으로의 이전은 다른 쪽으로의 이전을 유발하지만 각자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 경쟁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하락시키므로 형평과 자체의 유인이 혼재한다.
- (9)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식으로부터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노부모에게 소득이전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현상 등 지역적 차이가 발견된다.
- (10)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1) 만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 세대 중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을 감안한 이후에도 총소득(재산소득과는 별도로 재산 자체는 고려하지 않은 경우)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는 2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12) 2003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약 1조원의 지원금 예산과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3) 일반적으로 빈곤에 쉽게 빠지게 만드는 요인, 즉 여성가구주, 저학력, 독신 및 독거, 지방 거주 등의 특성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14)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 부적격수급이나 초과수급 등의 누수구가 존재하지만 그 규모는 사각지대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작은 것으로 보인다.
- (15) 고령인구 부양역할의 비중은 가족으로부터 국가로 계속 이전되고 있고, 가족 내에서는 장남을 중심으로 한 자식으로부터 노부모 자신에게로 부양책임이 넘겨지고 있다.

혈족 내에서는 자식이 노부모를 봉양하는 유교적 전통을 이어받고 사회적으로는 빈약한 노인소득보장 시스템을 가졌던 우리나라에서 자식의 노부모 부양과 소득이전은 노후 생계유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핵가족화·개인주의화와 인구 고령화,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 변화 등은 전통적인 노부모 부양관습을 허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포보은(反哺報恩)’은 점차 옛말이 되어가고 “한 아버지는 열 아들을 키우지만 열 아들이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는 독일 격언이 현 세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의 공적 부양으로의 전환은 전통사회의 해체와 근대적 복지국가의 출범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소득보장을 정부가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라는 요구와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고령인구에 대한 정부의 공적이전은 민간의 사적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수반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에 대한 민간의 수요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

노인소득보장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역할이 커지는 것은 사회 전반의 복지수준 향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노인소득보장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 책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절대빈곤 해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최우선 순위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우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예산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빈곤 해소라는 최우선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노인계층을 누락 없이 파악하여 적절한 소득이전을 통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인구의 효율적 활용 및 자립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함께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며 시급한 과제다.

참고문헌

- 강성진·전형준 (2005),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공공경제』, 제10권 제1호, pp.23~46.
- 구인회 (2001),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8권, pp.113~149.
- 김지경 (2004), 「은퇴자의 은퇴사유 및 은퇴 후 소득원천」, 『KLIPS Research Brief』, No. 3, 한국노동연구원.
- 김진욱 (2004),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20권, pp.171~195.
- 문형표 편 (2005),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0-02, 한국개발연구원.
- 박찬임 (2005),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정진호 외, 『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p.142~180.
- 박창균 (2005), 「고령화와 금융부문 정책과제」, 최준욱 편, 『인구고령화와 재정·금융대책』, 한국조세연구원.
- 석재은·김태완 (2000), 「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재민 (2006),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사적이전」, 『월간 노동리뷰 15』, 한국노동연구원, pp.75~83.
- 손병돈 (1999),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제39권, pp.157~179.
- 윤진호·박능후·강병구·이상은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04-22, 서울사회경제연구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
- 이태수·노대명·황덕순 (2004), 『한국 공공부조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정경희 외 (2005a),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05-03.
- 정경희 외 (2005b), 『현 고령층의 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 국민연금관리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5-85.
- 진재문 (1999), 「사회보장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 분석」, 『사회복지연구』, 제13호, pp.167~199.
- 홍경준 (2002),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0권, pp.61~85.
- Becker, Gary S. (1974),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1095-1117.

- Becker, Gary S. (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Enlarge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cker, Gary S. and Nigel Tomes (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 S1-S39.
- Behrman, Jere R., Robert A. Pollak, and Paul Taubman (1982), "Parental Preferences and Provision for Progen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0(1): 52-73.
- Brown, Jeffrey R. and Scott J. Weisbenner (2002), "Is a Bird in Hand Worth More than a Bird in the Bush?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Savings Behavior," NBER Working Paper, No. 8753.
- Cox, Donald (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3): 508-546.
- Cox, Donald and George Jakubson (1995), "The Connection between Public Transfers and Private Interfamily Transf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7: 129-167.
- Cox, Donald and Mark Rank (1992), "Inter vivos Transfers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 305-314.
- Cox, Donald, Zekeriva Eser, and Emmanuel Jimenez (1998), "Motives for Private Transfers over the Life Cycl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55: 57-80.
- Dunn, Thomas A. and John W. Phillips (1997), "The Timing and Division of Parental Transfers to Children," *Economic Letters*, 54: 135-137.
- Gale, William G. and John Karl Scholz (1994),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the Accumulation of Weal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8(4): 145-160.
- Heckman, James. J.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153-161.
- Hochguertel, Stefan and Henry Ohlsson (2000), "Compensatory Inter Vivos Gifts," Working Papers in Economics 31, Göteborg University.
- Hurd, Michael D. (1990), "Research on the Elderly: Economic Status, Retirement, and Consumption and Saving,"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8(2): 565-637.
- Kim, Hisam (2005), "Parental Investment between Children with Different Abilities," Working Paper, The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 Laferrère, Anne and François-Charles Wolff (2004), "Microeconomic Models of Family Transfers" in L.-A. Gérard-Varet, S.-C. Kolm and J. Mercier Ythier (eds.), *Handbook of Giving, Reciprocity and Altruism*, North Holland: Chapter 12.
- McGarry, Kathleen (1999), "Inter vivos Transfers and Intended Beques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3(3): 321-351.
- McGarry, Kathleen (2000), "Testing Parental Altruism: Implications of a Dynamic Model," NBER Working Paper, No. 7593.

- McGarry, Kathleen and Robert F. Schoeni (1995), "Transfer Behavior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Measurement and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Family,"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 S184-S226.
- McGarry, Kathleen and Robert F. Schoeni (1997), "Transfer Behavior Within the Family: Results from the Asset and Health Dynamics Stud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52B: 82-92.
- Ogawa, Naohiro and Robert D. Retherford (1997), "Shifting Costs of Caring for the Elderly Back to Families in Japan: Will It Work?"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3(1): 59-94.